

# 2024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입주자 모집 공고	청약신청 접수기간 (선순위)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우편접수)	소득·자산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24.09.26. (목)	'24.10.07.(월) ~ '24.10.11.(금) ※ 10.09.(수) 국경일은 접수불가	'24.11.08. (금)	'24.11.18.(월) ~ '24.11.20.(수)	대상자 별도 통보	'25.03.28. (금)	'25.04.09.(수) ~ '25.04.11.(금)

모집공고일  
2024년 9월 26일(목)

임대주택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SH공사의 소식이  
알고싶다면?



청약이  
어려우신가요?  
청약에 대한 도움을  
받고싶다면?





# 차 례

1. 공급일정 .....	8
2. 신청관련 문의 .....	10
3. 공급현황 .....	11
4. 신청자격 .....	20
5. 입주자 선정 .....	24
6.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35
7. 신청접수 일정 .....	38
8. 신청접수 안내 .....	39
9.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안내 .....	42
10. 심사서류 제출안내 .....	43
11. 동호추첨 및 당첨자발표 .....	50
12. 계약일시 · 장소 및 구비서류 .....	51
13. 유의사항 .....	52
14. 단지별 상세주소 안내 .....	54
15. 단지별 유의사항 .....	57
[별표1]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62
[별표2]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	63



# 2024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이번 입주자 모집은 인터넷/모바일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인터넷/모바일 신청시 개인용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9종) 중 1개가 필요하오니, 반드시 접수일 이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인터넷/모바일 접수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65세이상) 등 정보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방문접수를 진행합니다. 방문접수 시 신청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몰릴 경우 장시간(5시간 이상)의 대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인터넷 접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 방법】

- 인터넷/모바일 청약기간 : 2024.10.07.(월) 10:00 ~ 2024.10.11.(금) 17:00(※ 10.09.(수) 국경일은 접수불가)

- 청약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청약접수 (www.i-sh.co.kr/app)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9종) 중 1개로 청약 가능, PC 및 모바일 이용】

## 【방문접수 방법】

- 방문접수 기간 : 2024.10.08.(화) 10:00 ~ 2024.10.11.(금) 17:00 (※ 10.09.(수) 국경일은 접수불가)

2024.10.08.(화) : [강남구, 송파구, 강서구, 성동구, 노원구, 의정부시 내 단지]

2024.10.10.(목) : [강동구, 구로구 내 단지]

2024.10.11.(금) : [성북구, 마포구, 서초구, 양천구, 은평구, 중랑구 내 단지]

반드시 신청 단지의 방문청약 접수일을 확인하여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 구비서류 : 1)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 ※ 방문접수 유의사항

- 방문접수는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하여 공사에서 인터넷 접수를 대행하는 접수 방식이며, 청약 신청인원이 과도하게 몰릴 경우 청약과 관련한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어 가점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가져오시면 원활한 방문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도로명 주소, 서울시 최종 전입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및 납입회차(가입 은행에서 순위확인서 발급 통해 확인 가능)등을 반드시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 수** : (본인제외)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서울시 최종 전입일** : 주민등록초본 상 서울시에 최종전입한 날짜로 확인. 주민등록초본 지참 시 확인 가능

• **주택청약저축 납입회차** : 가입은행 방문 또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순위(가입)확인서 발급하여 납입인정회차 확인가능

- 신청 접수 후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지·주택형·가점사항 등 본인이 기재한 내역에 대해 변경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 장내 혼잡을 막기 위해 청약신청자 외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입장이 제한됩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대기시간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신청자격 (일반공급 전형에 해당하며, 우선공급 전형은 각 자격조건(공고문 30~34쪽)을 확인바람)

**[선순위 조건]**

-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사람 (1인 70%, 2인 60% 이하)
-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사람(2인 80% 이하)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4.신청자격 참고  
 - 단독세대주(1인가구)는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 외 세대구성원(직계존비속, 배우자)이 없는 자를 말하며, 본인과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형제, 자매)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단독세대주에 해당함

○ [중요] 세대원 수에 따른 전용면적 기준 안내

- 금회 모집은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세대원 수별 주택 공급가능 면적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공급합니다. 추후 공고에서는 세대원 수별 신청 가능한 단지 및 주택 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능한 전용면적	신청가능한 최소 세대원수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
50㎡ 미만	제한 없음
50㎡ 이상	2인 이상

-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 수보다 작은 면적 기준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최소세대원수를 만족하지 않는 신청자는 결격 처리되오니, 신청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자녀 소득 및 자산 요건 가산 적용

- 공급신청자가 공고일 현재(2024년 9월 26일)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이 적용됩니다.

기준일: 2023년 3월 28일		
기준일 이후(당일 포함) 출생 자녀수 (태아 포함)	기준일 전 출생 자녀수 (미성년자)	가산비율
1명	0명	10%p
1명	1명 이상	20%p
2명 이상	상관없음	20%p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인정 받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서류심사 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급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 출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 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하기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 또는 파양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출생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 입양의 경우: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상태가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 자녀만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자세한 소득 및 자산 요건은 공고문 22~2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 동일유형(국민↔국민, 행복↔행복 등)의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이전에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자동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단, 예비입주자 선정은 ①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통합·국민·영구·행복)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에서 공급한 '2021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2021.09.24.)' 또는 '2022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2022.05.20.)', '2023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2023.06.23.)'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이번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이전 순번은 자동으로 삭제**처리 됩니다.
- 위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항목은 우리 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주체(LH, GH 등)가 공급하는 임대주택도 포함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 도입

####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이란?

- 공고 시점에 공가가 없는 단지에도 대기자(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모집하는 방식
  - 예비입주자는 공가 발생 시 예비 순번에 의해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대상이 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이번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는 단지별 평균 퇴거율 및 계약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대상 단지 및 모집 예비입주자 수는 **공고문 (3. 공급현황, 11~1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단지 및 평형에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을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대기 순번이 결정됩니다.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입주 대기 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고,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해당 단지에 공가가 발생하더라도 철거민 등 특별공급 신청자가 있거나 긴급 주거이동이 발생한 경우 예비입주자의 대기 순번에 우선하여 공급합니다.
  - 이번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 자격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위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항목에 따라 동일 임대주택 유형에 예비자로 선정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명부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09.26.(목)**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기준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하되,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명의만 유효하며, 가입은행을 잘못 입력하거나 잘못 기재 시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공고일 이후 영업일('24.09.27.)부터 발급됨.]

※ 주택관리번호 : 2024-000553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으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인정될 수 있으니 세부사항은 **공고문 [별표1]**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순위별 접수일정(아래 접수일정 또는 공고문 신청접수일정 참조)에 따라 청약하여야 하며 해당 순위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우리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에 대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없이 상담이 진행되므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청약자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가점사항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 상담내용, 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 공급일정

##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입주자 모집 공고	청약신청 접수기간 (선순위)*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우편접수)	소득·자산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24.09.26. (목)	'24.10.07.(월) ~ '24.10.11.(금) ※ 10.09.(수) 국경일은 접수불가	'24.11.08. (금)	'24.11.18. (월) ~ '24.11.20. (수)	대상자 별도 통보	'25.03.28. (금)	'25.04.09. (수) ~ '25.04.11. (금)

\* 방문접수는 10.08(화), 10.10(목), 10.11(금) 3일간에 한함



## ■ 청약신청 세부일정

대상자	접수일정	접수방법
○ 공급(일반, 주거약자) <u>선순위</u> 자격대상자 - 50㎡미만(29㎡, 39㎡, 49㎡)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사람 (1인의 경우 70% 이하, 2인의 경우 60% 이하) - 50㎡이상 60㎡이하(59㎡)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사람(2인의 경우 80% 이하)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단독세대주 제외)	2024.10.07.(월) 10:00 ~ 2024.10.11.(금) 17:00 ※ 10.09.(수) 국경일은 접수불가	<b>인터넷청약</b> : www.i-sh.co.kr/ app
○ 우선공급 자격대상자 - “4. 신청자격”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고문 30~34쪽의 각 우선공급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2024.10.08.(화) ~ 10.11.(금) 10:00 ~ 17:00 ※ 10.09.(수) 국경일은 접수불가	<b>방문청약</b> :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
○ 공급(일반, 주거약자) <u>후순위</u> 자격대상자 - 50㎡미만(29㎡, 39㎡, 49㎡)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초과 70%이하인 사람 (1인의 경우 90% 이하, 2인의 경우 80% 이하) - 50㎡이상 60㎡이하(59㎡)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사람(2인의 경우 80% 이하)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미만 납입한 사람(미가입자 포함 / 단독세대주 제외) (※ 후순위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후순위자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10.24.(목) 10:00 ~ 17:00	<b>인터넷청약</b> : www.i-sh. co.kr/app

2024.10.08.(화) : [강남구, 송파구, 강서구, 성동구, 노원구, 의정부시 내 단지]

2024.10.10.(목) : [강동구, 구로구 내 단지]

2024.10.11.(금) : [성북구, 마포구, 서초구, 양천구, 은평구, 중랑구 내 단지]

반드시 신청 단지의 방문청약 접수일을 확인하여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 전형 대상자의 경우 면적별 선순위 조건을 확인하시어 해당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은 순위별 최종 청약일 마감시간(17:00)까지 청약접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단, 모집호수 10호 미만 주택의 경우 300%)

※ 후순위자 신청가능여부는 후순위 신청일 오전 9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2. 신청관련 문의

- 대표전화, 인터넷청약관련 문의 :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점심시간: 12:00~13:00)
- 당첨확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및 콜센터 ARS 조회
- 상담관련 유의사항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숙지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청약 신청으로 청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자세하게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관련 콜센터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약자가 처해있는 다양한 상황이나 정확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청약 관련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공급하는 단지의 위치, 평형 등에 대한 정보는 전자책[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 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급 단지 정보 검색 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접속 → 청약정보 → 단지별 임대정보 → SH주택정보 사이트 → 단지명 입력 후 검색 → 단지개요 및 세대별 평면도 등 확인

### 3. 공급현황

#### ■ 임대대상 및 금액 (신규공급 단지)

자치구	지구 및 단지	전용면적 (㎡)	공급호수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세대별 계약면적 (㎡)				입주 시작 예정일
			계 (A+B)	우선 공급	일반공급		계	계약금 (계약시) 20%	잔금 (입주시) 8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합계			260	142	82	36									
강동구	고덕강일 2BL 국민임대주택	29	73	22	35	16	20,560	4,112	16,448	204,300	29.46	14.46	26.76	70.68	'25.05
		39	67	43	24		39,310	7,862	31,448	289,500	39.52	18.30	35.89	93.71	
		49	120	77	23	20	60,280	12,056	48,224	385,600	49.54	22.78	45.00	117.32	

#### ■ 임대대상 및 금액 (재공급 단지)

자치구	지구 및 단지	신청 유형	공급 구분	모집세대수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세대별 계약면적 (㎡)			
				합계 (A+B)	공가 입주자 (A)	금회 공급할 예비 입주자 (B)	기존 대기중 예비자	계	계약금 (계약시) 20%	잔금 (입주시) 8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1,060	299	761									
강남구	세곡2지구 4단지 · 강남한양수자인	59㎡	일반	6		6	7	64,060	12,812	51,248	426,600	59.93	21.62	38.52	120.07
			주거약자	2		2	2								
	세곡2지구 6단지 · 강남한신 휴플러스 6단지	39㎡	일반	2		2		40,030	8,006	32,024	291,600	39.86	17.24	28.8	85.90
			주거약자	1		1	1								
		49㎡	주거약자	1		1	2	61,510	12,302	49,208	392,100	49.79	21.29	35.98	107.06
	세곡2지구 8단지 · 강남한신휴플러스 8단지	59㎡	일반	3		3		94,740	18,948	75,792	495,400	59.97	23.18	53.55	136.70
	세곡지구 · 강남신동아파밀리에 1,2단지 · 세곡리엔파크 3,4단지 · 강남데시앙파크	39㎡	일반	2		2	3	29,730	5,946	23,784	252,100	39.95	18.37	32.31	90.63
			주거약자	6		6	1	31,590	6,318	25,272	267,500				
		49㎡	일반	7		7	3	44,410	8,882	35,528	329,200	49.74	22.76	40.24	112.74
			주거약자	6		6	2	47,930	9,586	38,344	354,100				
59㎡	일반	15		15	14	52,630	10,526	42,104	373,000	59.97	17.44	37.78	115.19		
주거약자	2		2	4	57,350	11,470	45,880	391,600							
강동구	강동권역 강일지구 · 강일리버파크 1~10단지	39㎡	주거약자	7		7	3	29,380	5,876	23,504	228,500	39.64	19.70	20.93	80.27
		49㎡	일반	10		10	22	40,010	8,002	32,008	265,300	49.82	23.48	25.12	98.42
			주거약자	5	1	4									
	49㎡	일반	40		40	14	47,930	9,586	38,344	309,200	59.71	22.84	27.20	109.75	
		주거약자	10		10	2	61,740	12,348	49,392	356,200					
			일반	14		14	8	42,170	8,434	33,736					301,800
강일2지구 · 고덕리엔파크 1~3단지	49㎡	주거약자	5	1	4		42,750	8,550	34,200	311,900	49.89	17.18	28.10	95.17	
		일반	40		40	6	49,630	9,926	39,704	342,000					
	59㎡	주거약자	2		2	2	50,410	10,082	40,328	350,200	59.72	20.43	33.63	113.78	

자 치 구	지구 및 단지	신청 유형	공급 구분	모집세대수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세대별 계약면적 (㎡)			
				합계 (A+B)	공가 입주자 (A)	금회 공급할 예비 입주자 (B)	기존 대기중 예비자	계	계약금 (계약시) 20%	잔금 (입주시) 8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강 동 구	고덕강일2지구 · 강동리버스트 4,6,7,8단지	29㎡	일반	5		5	15	17,810	3,562	14,248	175,400	29.27	13.55	21.32	64.14
			주거약자	2		2	3	18,490	3,698	14,792	183,500				
		39㎡	일반	6		6	8	34,540	6,908	27,632	242,100	39.41	18.00	28.71	86.12
			주거약자	5	2	3		35,660	7,132	28,528	254,200				
		49㎡	일반	6		6		52,380	10,476	41,904	317,700	49.25	21.86	32.18	103.29
			주거약자	2		2	1	52,570	10,514	42,056	320,600				
	고덕강일3지구 · 강동리엔파크 9, 14단지	29㎡	일반	4		4	8	17,780	3,556	14,224	173,300	29.03	14.36	18.65	62.04
			주거약자	2		2	2	19,840	3,968	15,872	194,800				
		39㎡	일반	2		2	5	34,240	6,848	27,392	240,400	39.10	18.42	25.13	82.65
			주거약자	2		2	2	37,870	7,574	30,296	262,900				
		49㎡	일반	2		2	5	52,270	10,454	41,816	316,400	49.67	22.73	31.91	104.31
			주거약자												
강 서 구	마곡지구 · 마곡엠벨리 1~15단지 (9단지 제외)	49㎡	일반	15		15	11	53,550	10,710	42,840	365,600	49.77	21.36	41.92	113.05
			주거약자	8	4	4		62,240	12,448	49,792	404,800				
		59㎡	일반	10		10	30	55,530	11,106	44,424	362,300	59.79	25.55	50.36	135.70
			주거약자	3		3	1	72,420	14,484	57,936	447,100				
	마곡지구 9단지 · 마곡엠벨리 9단지	49㎡	일반	4		4	13	55,810	11,162	44,648	307,300	49.53	20.1	39.19	108.82
		발산지구 · 마곡수명산파크 1~7단지	49㎡	일반	6		6	16	35,360 37,540	7,072 7,508	28,288 30,032	252,300 275,900	49.83	16.99	25.59
	59㎡		일반	20	10	10		38,520 41,610	7,704 8,322	30,816 33,288	282,200 309,600	59.76	19.58	26.36	105.70
	구 로 구	천왕지구 · 천왕이펜하우스 1~6단지	39㎡	일반	3		3	5	27,670	5,534	22,136	240,400	39.45	18.87	31.57
주거약자				4	2	2		34,150	6,830	27,320	276,300				
49㎡			일반	27	13	14		42,070	8,414	33,656	313,200	49.58	23.92	34.2	107.70
			주거약자	5	1	4		47,280	9,456	37,824	336,700				
59㎡			일반	51	36	15		49,950	9,990	39,960	352,900	59.95	25.13	47.97	133.05
			주거약자	7	5	2		57,680	11,536	46,144	379,300				
천왕2지구 · 천왕연지타운 1,2단지		39㎡	일반	9	4	5		39,980	7,996	31,984	282,000	39.97	16.68	33.06	89.71
			주거약자	3	1	2									
		49㎡	일반	9	2	7		52,350	10,470	41,880	333,500	49.34	20.29	40.79	110.42
			주거약자	4		4		59,580	11,916	47,664	358,700				
		59㎡	일반	34	29	5		62,690	12,538	50,152	381,000	59.86	19.93	39.94	119.73
			주거약자					73,580	14,716	58,864	429,900				
향동지구 · 향동하버라인 2,3,4,8단지	39㎡	일반	6	2	4		33,140	6,628	26,512	244,200	39.91	18.18	28.66	86.75	
		주거약자	2		2		36,470	7,294	29,176	260,000					
	49㎡	일반	5		5	6	49,710	9,942	39,768	310,400	49.86	21.89	35.8	107.55	
		주거약자					56,180	11,236	44,944	338,500					
	59㎡	일반	20	16	4		57,500	11,500	46,000	363,700	59.74	24.84	44.74	129.32	
		주거약자	2		2		63,940	12,788	51,152	382,700					
노 원 구	상계보금자리지구 · 중계센트럴파크	49㎡	일반	7	3	4						49.49	22.01	32.96	104.46
			주거약자	6	4	2		61,450	12,290	49,160	363,100				
	상계장암지구 (3,4단지)	39㎡	일반	23	13	10		28,570	5,714	22,856	223,400	39.81	12.73	18.37	70.91
		49㎡	일반	6	3	3		41,650	8,330	33,320	285,100	49.93	15.39	23.03	88.35
수락리버시티 3,4단지	59㎡	일반	3	1	2		54,470	10,894	43,576	359,800	59.9	19.65	34.79	114.34	

자치구	지구 및 단지	신청 유형	공급 구분	모집세대수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세대별 계약면적 (㎡)			
				합계 (A+B)	공가 입주자 (A)	금회 공급할 예비 입주자 (B)	기존 대기중 예비자	계	계약금 (계약시) 20%	잔금 (입주시) 8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마포구	상암2지구 · 상암월드컵파크 9~12단지	39㎡	일반	6		6	8	30,990	6,198	24,792	246,900	39.33	14.25	24.27	77.85
			주거약자	4		4									
		49㎡	일반	9		9	7	45,620	9,124	36,496	316,000	49.58	18.07	27.26	94.91
	주거약자		2		2	2	52,300	10,460	41,840	325,100					
	59㎡	일반	30	15	15		54,880	10,976	43,904	363,900	59.37	22.22	32.66	114.25	
		주거약자	2		2		62,650	12,530	50,120	371,500					
상암3~8단지 · 상암월드컵8단지	39㎡	일반	6	3	3		27,700	5,540	22,160	244,300	39.76	15.54	30.92	86.22	
	49㎡	일반	17	11	6		41,240	8,248	32,992	296,600	49.62	18.22	38.58	106.42	
서초구	내곡지구 · 서초포레스타 2, 6단지	39㎡	일반	3		3	5	33,750	6,750	27,000	290,300	39.37	18.55	31.21	89.13
			주거약자	4	1	3									
	49㎡	일반	21		21	6	51,100	10,220	40,880	377,200	49.33	23.40	39.10	111.83	
		주거약자	7	3	4		63,750	12,750	51,000	410,100					
우면2지구 · 서초네이처힐 2~7단지	59㎡	일반	20		20	13	50,480 69,880	10,096 13,976	40,384 55,904	340,600 390,200	59.99	18.73	44.01	122.73	
마장동 임대아파트 · 마장동 에스에이치빌	39㎡	일반	5		5		20,100	4,020	16,080	257,000	39.84	17.38	28.13	85.35	
	49㎡	일반	3		3	1	31,440	6,288	25,152	316,700	49.95	21.28	35.27	106.50	
장월1 · 장월 에스에이치빌 1단지	39㎡	일반	12	6	6		13,950	2,790	11,160	210,100	39.34	14.06	29.81	83.21	
	49㎡	일반	5	2	3		18,810	3,762	15,048	254,900	49.33	17.63	37.39	104.35	
송파구	마천지구 · 송파파크데일 1,2단지	39㎡	일반	2		2	2	29,640	5,928	23,712	239,500	39.96	12.37	21.74	74.07
			주거약자	4	2	2		30,520	6,104	24,416	245,500				
		49㎡	일반	4		4	3	43,470	8,694	34,776	307,700	49.63	15.29	27.00	91.92
			주거약자	5	1	4		44,620	8,924	35,696	314,400				
		59㎡	일반	15	2	13		51,640	10,328	41,312	347,700	59.91	18.71	32.59	111.21
			주거약자	2		2	1	53,670	10,734	42,936	360,900				
	오금지구 · 송파레미니스 1,2단지	39㎡	일반	7	3	4		37,120	7,424	29,696	237,300	39.47	18.68	27.20	85.35
			주거약자	1		1	1	37,200	7,440	29,760	246,300				
		49㎡	일반	2		2		55,910	11,182	44,728	313,500	49.31	23.53	27.22	100.06
			주거약자	3	1	2									
	59㎡	일반	4	1	3		68,830	13,766	55,064	383,400	59.85	28.46	33.03	121.34	
		주거약자	2		2										
	위례포레샤인 13단지	39㎡	일반	2		2	6	40,980	8,196	32,784	261,700	39.76	18.34	32.49	90.59
		주거약자	4	2	2										
59㎡	주거약자	2		2		72,520	14,504	58,016	387,900	59.31	26.81	48.46	134.58		
	위례포레샤인 23단지	39㎡	일반	8	4	4		41,010	8,202	32,808	250,900	39.79	18.47	27.70	85.96
주거약자			4	2	2										
49㎡		일반	13	7	6		61,280	12,256	49,024	320,000	49.48	22.05	34.46	105.99	
		주거약자	2		2										
장지지구 · 송파파인타운 2~11단지	39㎡	일반	11	6	5		27,530 28,500	5,506 5,700	22,024 22,800	231,500 236,500	39.99	16.08	27.91	83.98	
	49㎡	일반	18	6	12		37,600 45,380	7,520 9,076	30,080 36,304	265,700 291,200	49.77	17.33	28.23	95.33	
		일반	12	2	10		47,720 58,780	9,544 11,756	38,176 47,024	322,400 355,500					

자치구	지구 및 단지	신청 유형	공급 구분	모집세대수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세대별 계약면적 (㎡)				
				합계 (A+B)	공가 입주자 (A)	금회 공급할 예비 입주자 (B)	기존 대기중 예비자	계	계약금 (계약시) 20%	잔금 (입주시) 8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양천구	신정3지구 · 신정아펜하우스 1~5단지	49㎡	일반	15		15	8	38,570	7,714	30,856	292,400	49.92	14.85	30.84	95.61	
			주거약자	3		3	3	48,000	9,600	38,400	337,600					
	59㎡	일반	54	27	27		45,380	9,076	36,304	331,100	59.83	18.38	36.96	115.17		
		주거약자	6	2	4		56,440	11,288	45,152	379,300						
	신정4지구 · 신정숲속마을	39㎡	일반	7	1	6		27,260	5,452	21,808	227,700	39.92	19.75	23.86	83.53	
			주거약자	1		1										
이천구	은평1지구 · 상림마을6-1~ 상림마을8-3단지	59㎡	일반	10		10	28	59,730 76,880	11,946 15,376	47,784 61,504	362,400 440,100	59.80	29.76	41.31	130.87	
	은평2지구 · 박석고개1-1,1-3단지 · 마고정3-1~3-3단지 · 우물골2-1,2-2단지	59㎡	일반	7		7	12	55,780 66,750	11,156 13,350	44,624 53,400	356,400 402,800	59.36	15.71	24.23	99.30	
	은평3지구 · 구파발9-1단지 · 구파발10-2단지 · 구파발10-3단지	39㎡	일반	6		6		29,770 31,010	5,954 6,202	23,816 24,808	214,400 239,000	39.92	11.44	17.98	69.34	
		49㎡	일반	3		3		45,650	9,130	36,520	307,200	49.89	13.86	22.47	86.22	
		59㎡	일반	22	4	18		54,080 59,080	10,816 11,816	43,264 47,264	346,800 363,800	59.86	17.00	26.96	103.82	
	중랑구	신내데시앙	59㎡	일반	24	8	16		48,890	9,778	39,112	314,300	59.70	20.50	23.05	103.25
				주거약자	5	1	4									
		신내3지구 · 신내우디안1단지 · 신내데시앙포레	49㎡	일반	18		18	8	46,770	9,354	37,416	323,700	49.51	20.87	30.12	100.50
				주거약자	6		6	1	47,580	9,516	38,064	337,100				
59㎡	일반	29	4	25		56,340	11,268	45,072	372,400	59.46	25.31	36.16	120.93			
	주거약자	6	2	4		56,650	11,330	45,320	384,300							
의정부시	상계장암지구 (1,2단지)	39㎡	일반	2		2	3	26,160	5,232	20,928	204,500	39.81	13.46	17.63	70.9	
		49㎡	일반	17	11	6		38,160	7,632	30,528	261,100	49.93	16.32	22.1	88.35	
	59㎡	일반	10	6	4		53,020 53,650	10,604 10,730	42,416 42,920	339,100 340,600	59.50	19.36	26.35	105.21		

※ 기존 대기중 예비자 : 2021년 1차, 2022년 1차, 2023년 1차 국민임대 예비자로 해당 예비자 순번의 다음 번호로 예비순번이 부여됩니다.

※ 신규공급 단지(고덕강일2BL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일은 준공일정 등으로 인하여 계약체결 후 상세 안내할 예정이며, 재공급 세대의 입주 예정일은 2025년 4월 이후 예정이나 세대 하자점검 사유 등 공급 보류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선발인원은 공고일 이후 입주자 퇴거 등 공가 상황 변동에 따라 명시된 인원보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공급단지 중 재공급단지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입니다.
- 공가 입주자는 본 공고 일정에 따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한 물량이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즉시 입주가 아닌 다음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물량입니다.
- 예비입주자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당첨세대의 미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가를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공급 시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 단지별 최고층수 및 평형별 해당 동, 평면, 구조, 방 개수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주택면적은 동일지구 또는 동일단지 내 대표적인 1개 타입의 면적으로, 동일단지 내 동일한 신청유형의 임대가격은 동일합니다. 단, 복층이 혼재되어있는 단지(은평1지구 등)의 경우 별도 가격이 적용될 수 있으며 무작위 전산추첨에 따라 해당 세대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단지 구분 없이 지구별, 전용면적 별로 신청 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단지 및 동호가 결정됩니다. 배정된 단지에 따라 상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임대조건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지구단위 공급 단지: 세곡지구, 강동권역 강일지구, 강일2지구, 고덕강일2·3지구, 마곡지구, 발산지구, 천왕지구, 천왕2지구, 향동지구, 상암2지구, 내곡지구, 우면2지구, 마천지구, 오금지구, 장지지구, 신정3지구, 은평1·2·3지구, 신내3지구, 상계장암지구(1,2단지), 상계장암지구(3,4단지)
- 상계장암지구 1,2단지는 의정부시에 위치해 있는 임대주택으로 당첨 시 의정부시로 전입하여야 하며 향후 서울시 내 임대주택 지원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에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면적이고,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고, 평면유형에 따라 방 개수 및 세대구조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사유들로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 주택은 주거약자에게 편리한 시설(욕실 미닫이문, 욕실 및 현관 단차 제거, 낮게 설치된 전등 스위치 등)을 갖춘 주택으로 저층(1~3층)에 건립되어 있으며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주택 중 서초포레스타 2단지 212동은 해당 동이 전체 주거약자주택으로 1~12층까지, 세곡지구 내 세곡리엔파크4단지는 해당 단지가 전체 주거약자주택으로 1~13층까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급구분 중 일반공급으로 신청한 사람은 장애인 또는 고령자 등의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주거약자주택으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주거약자 주택으로 공급받길 희망하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은 청약시 주거약자주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단지별·해당동호별로 인근에 위치한 철도, 도로, 유흥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청 전에 임대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위치는 [14. 단지별 상세주소 안내\(공고문 54~5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임대주택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을 변경(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임대금액 전환안내

자치구	지구 및 단지	신청 유형	기준 임대 조건		전환 구분	최대 전환 시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강남구	세곡2지구 4단지 · 강남한양수자인	59㎡	64,060	426,600	(+)	109,910	170,600
					(-)	25,620	506,600
	세곡2지구 6단지 · 강남한신희플러스6단지	39㎡	40,030	291,600	(+)	71,370	116,600
					(-)	16,010	341,600
		49㎡	61,510	392,100	(+)	103,650	156,800
					(-)	24,600	468,900
	세곡2지구 8단지 · 강남한신희플러스 8단지	59㎡	94,740	495,400	(+)	147,980	198,100
					(-)	37,890	613,800
	세곡지구 · 강남신동아파밀리에 1,2단지 · 세곡리엔파크3,4단지 · 강남데시앙파크	39㎡	29,730 ~ 31,590	252,100 ~ 267,500	(+)	56,820 ~ 60,330	100,800 ~ 107,000
					(-)	11,890 ~ 12,630	289,200 ~ 307,000
		49㎡	44,410 ~ 47,930	329,200 ~ 354,100	(+)	79,800 ~ 85,970	131,600 ~ 141,600
					(-)	17,760 ~ 19,170	384,700 ~ 414,000
59㎡	52,630 ~ 57,350	373,000 ~ 391,600	(+)	92,710 ~ 99,060	149,200 ~ 156,600		
			(-)	21,050 ~ 22,940	438,700 ~ 460,800		

자치구	지구 및 단지	신청 유형	기준 임대 조건		전환 구분	최대 전환 시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강동구	강동권역 강일지구 · 강일리버파크1~10단지	39㎡	29,380	228,500	(+)	53,930	91,400
					(-)	11,750	265,200
		49㎡	40,010	265,300	(+)	68,520	106,100
					(-)	16,000	315,300
		59㎡	47,930 ~ 61,740	309,200 ~ 356,200	(+)	81,170 ~ 100,030	123,600 ~ 142,400
					(-)	19,170 ~ 24,690	369,100 ~ 433,300
	강일2지구 · 고덕리엔파크1~3단지	49㎡	42,170 ~ 42,750	301,800 ~ 311,900	(+)	74,860 ~ 75,860	120,700 ~ 124,700
					(-)	16,860 ~ 17,100	354,800 ~ 364,600
		59㎡	49,630 ~ 50,410	342,000 ~ 350,200	(+)	87,160 ~ 87,430	136,800 ~ 140,000
					(-)	19,850 ~ 20,160	405,000 ~ 412,200
	고덕강일 2BL 국민임대주택	29㎡	20,560	204,300	(+)	42,510	81,700
					(-)	8,220	230,000
39㎡		39,310	289,500	(+)	70,420	115,800	
				(-)	15,720	338,600	
49㎡		60,280	385,600	(+)	101,720	154,200	
				(-)	24,110	460,900	
고덕강일2지구 · 강동리버스트 4,6,7,8단지	29㎡	17,810 ~ 18,490	175,400 ~ 183,500	(+)	36,660 ~ 38,190	70,100 ~ 73,400	
				(-)	7,120 ~ 7,390	197,600 ~ 206,600	
	39㎡	34,540 ~ 35,660	242,100 ~ 254,200	(+)	60,700 ~ 62,990	96,800 ~ 101,600	
				(-)	13,810 ~ 14,260	285,400 ~ 298,700	
	49㎡	52,380 ~ 52,570	317,700 ~ 320,600	(+)	86,720 ~ 86,920	127,000 ~ 128,200	
				(-)	20,950 ~ 21,020	383,400 ~ 386,000	
고덕강일3지구 · 강동리엔파크 9,14단지	29㎡	17,780 ~ 19,840	173,300 ~ 194,800	(+)	36,400 ~ 40,770	69,300 ~ 77,900	
				(-)	7,110 ~ 7,930	195,500 ~ 219,600	
	39㎡	34,240 ~ 37,870	240,400 ~ 262,900	(+)	60,080 ~ 66,130	96,100 ~ 105,100	
				(-)	13,690 ~ 15,140	283,200 ~ 310,200	
	49㎡	52,270	316,400	(+)	86,280	126,500	
				(-)	20,900	381,700	
강서구	마곡지구 · 마곡엠벨리1~15단지 (9단지 제외)	49㎡	53,550 ~ 62,240	365,600 ~ 404,800	(+)	93,240 ~ 105,740	146,200 ~ 161,900
					(-)	21,420 ~ 24,890	433,000 ~ 482,600
		59㎡	55,530 ~ 72,420	362,300 ~ 447,100	(+)	97,310 ~ 120,350	144,900 ~ 178,800
					(-)	22,210 ~ 28,960	440,400 ~ 537,400
	마곡지구 9단지 · 마곡엠벨리 9단지	49㎡	55,810	307,300	(+)	88,830	122,900
					(-)	22,320	377,000
	발산지구 · 마곡수명산파크1~7단지	49㎡	35,360 ~ 37,540	252,300 ~ 275,900	(+)	62,470 ~ 67,190	100,900 ~ 110,300
					(-)	14,140 ~ 15,010	296,500 ~ 322,800
59㎡		38,520 ~ 41,610	282,200 ~ 309,600	(+)	68,860 ~ 74,880	112,800 ~ 123,800	
				(-)	15,400 ~ 16,640	330,300 ~ 361,600	



자치구	지구 및 단지	신청유형	기준 임대 조건		전환구분	최대 전환 시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구로구	천왕지구 · 천왕이펜하우스1~6단지	39㎡	27,670	240,400	(+)	53,510 ~ 63,840	96,100 ~ 110,500	
			~34,150	~276,300	(-)	11,060 ~ 13,660	275,000 ~ 318,900	
		49㎡	42,070	313,200	(+)	75,740 ~ 82,630	125,200 ~ 134,600	
			~47,280	~336,700	(-)	16,820 ~ 18,910	365,800 ~ 394,500	
		59㎡	49,950	352,900	(+)	88,140 ~ 98,440	141,100 ~ 151,700	
			~57,680	~379,300	(-)	19,980 ~ 23,070	415,600 ~ 451,400	
	천왕2지구 · 천왕연지타운1,2단지	39㎡	39,980	282,000	(+)	70,280	112,800	
					(-)	15,990	331,900	
		49㎡	52,350	333,500	(+)	88,180 ~ 98,140	133,400 ~ 143,400	
			~59,580	~358,700	(-)	20,940 ~ 23,830	398,900 ~ 433,100	
		59㎡	62,690	381,000	(+)	103,630 ~ 119,780	152,400 ~ 171,900	
			~73,580	~429,900	(-)	25,070 ~ 29,430	459,300 ~ 521,800	
항동지구 · 항동하버라인 2,3,4,8단지	39㎡	33,140	244,200	(+)	59,390 ~ 64,410	97,600 ~ 104,000		
		~36,470	~260,000	(-)	13,250 ~ 14,580	285,600 ~ 305,600		
	49㎡	49,710	310,400	(+)	83,070 ~ 92,550	124,100 ~ 135,400		
		~56,180	~338,500	(-)	19,880 ~ 22,470	372,500 ~ 408,700		
	59㎡	57,500	363,700	(+)	96,590 ~ 104,970	145,400 ~ 153,000		
		~63,940	~382,700	(-)	23,000 ~ 25,570	435,500 ~ 462,400		
노원구	상계보금자리지구 · 중계센트럴파크	49㎡	61,450	363,100	(+)	100,470	145,200	
					(-)	24,580	439,900	
	상계장암지구(3,4단지) · 수락리버시티3,4단지	39㎡	28,570	223,400	(+)	52,580	89,300	
					(-)	11,420	259,100	
		49㎡	41,650	285,100	(+)	72,290	114,000	
					(-)	16,660	337,100	
		59㎡	54,470	359,800	(+)	93,130	143,900	
					(-)	21,780	427,900	
	마포구	상암2지구 · 상암월드컵파크 9~12단지	39㎡	30,990	246,900	(+)	57,530	98,700
						(-)	12,390	285,600
			49㎡	45,620	316,000	(+)	79,570 ~ 87,240	126,400 ~ 130,000
				~52,300	~325,100	(-)	18,240 ~ 20,920	373,000 ~ 390,400
59㎡			54,880	363,900	(+)	93,990 ~ 102,570	145,500 ~ 148,600	
			~62,650	~371,500	(-)	21,950 ~ 25,060	432,500 ~ 449,800	
상암3-8단지 · 상암월드컵8단지		39㎡	27,700	244,300	(+)	53,950	97,700	
					(-)	11,080	278,900	
		49㎡	41,240	296,600	(+)	73,120	118,600	
					(-)	16,490	348,100	

자치구	지구 및 단지	신청 유형	기준 임대 조건		전환 구분	최대 전환 시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서초구	내곡지구 · 서초포레스타 2,6단지	39㎡	33,750	290,300	(+)	64,950	116,100
					(-)	13,500	332,400
	우면2지구 · 서초네이처힐2~7단지	49㎡	51,100 ~ 63,750	377,200 ~ 410,100	(+)	91,640 ~ 107,820	150,800 ~ 164,000
					(-)	20,440 ~ 25,500	441,000 ~ 489,700
		59㎡	50,480 ~ 69,880	340,600 ~ 390,200	(+)	87,080 ~ 111,820	136,200 ~ 156,000
					(-)	20,190 ~ 27,950	403,700 ~ 477,500
성동구	마장동 임대아파트 · 마장동 에스에이치빌	39㎡	20,100	257,000	(+)	47,710	102,800
					(-)	8,040	282,100
	49㎡	31,440	316,700	(+)	65,480	126,600	
				(-)	12,570	356,000	
성북구	장월1 · 장월1 에스에이치빌 1단지	39㎡	13,950	210,100	(+)	36,530	84,000
					(-)	5,580	227,500
	49㎡	18,810	254,900	(+)	46,210	101,900	
				(-)	7,520	278,400	
송파구	마천지구 · 송파파크데일1,2단지	39㎡	29,640 ~ 30,520	239,500 ~ 245,500	(+)	55,370 ~ 56,900	95,800 ~ 98,200
					(-)	11,850 ~ 12,200	276,500 ~ 283,600
		49㎡	43,470 ~ 44,620	307,700 ~ 314,400	(+)	76,550 ~ 78,410	123,000 ~ 125,700
					(-)	17,380 ~ 17,840	362,000 ~ 370,100
		59㎡	51,640 ~ 53,670	347,700 ~ 360,900	(+)	89,010 ~ 92,460	139,000 ~ 144,300
					(-)	20,650 ~ 21,460	412,200 ~ 428,000
	오금지구 · 송파레미니스1,2단지	39㎡	37,120 ~ 37,200	237,300 ~ 246,300	(+)	62,700 ~ 63,590	94,900 ~ 98,500
					(-)	14,840 ~ 14,880	283,800 ~ 292,700
		49㎡	55,910	313,500	(+)	89,590	125,400
					(-)	22,360	383,300
		59㎡	68,830	383,400	(+)	110,040	153,300
					(-)	27,530	469,400
	장지지구 · 송파파인타운2~11단지	39㎡	27,530 ~ 28,500	231,500 ~ 236,500	(+)	52,400 ~ 53,910	92,600 ~ 94,600
					(-)	11,010 ~ 11,400	265,900 ~ 272,100
		49㎡	37,600 ~ 45,380	265,700 ~ 291,200	(+)	66,160 ~ 76,680	106,200 ~ 116,400
					(-)	15,040 ~ 18,150	312,700 ~ 347,900
		59㎡	47,720 ~ 58,780	322,400 ~ 355,500	(+)	82,370 ~ 96,980	128,900 ~ 142,200
					(-)	19,080 ~ 23,510	382,000 ~ 428,900
	위례포레샤인 13단지	39㎡	40,980	261,700	(+)	69,110	104,600
					(-)	16,390	312,900
59㎡		72,520	387,900	(+)	114,210	155,100	
				(-)	29,000	478,500	
위례포레샤인 23단지	39㎡	41,010	250,900	(+)	67,980	100,300	
				(-)	16,400	302,100	
	49㎡	61,280	320,000	(+)	95,660	128,000	
				(-)	24,510	396,600	

자치구	지구 및 단지	신청유형	기준 임대 조건		전환구분	최대 전환 시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양천구	신정3지구 · 신정이펜하우스1~5단지	49㎡	38,570 ~ 48,000	292,400 ~ 337,600	(+)	70,000 ~ 84,280	116,900 ~ 135,000	
		59㎡	45,380 ~ 56,440	331,100 ~ 379,300	(-)	15,420 ~ 19,200	340,600 ~ 397,600	
	신정4지구 · 신정숲속마을	39㎡	27,260	227,700	(+)	51,740	91,000	
					(-)	10,900	261,700	
	이평구	은평1지구 · 상림마을6-1~8-3단지	59㎡	59,730 ~ 76,880	362,400 ~ 440,100	(+)	98,680 ~ 124,180	144,900 ~ 176,000
						(-)	23,890 ~ 30,750	437,000 ~ 536,200
은평2지구 · 박석고개1-1,1-3단지 · 마고정3-1~3-3단지 · 우물골2-1, 2-2단지		59㎡	55,780 ~ 66,750	356,400 ~ 402,800	(+)	94,090 ~ 110,030	142,500 ~ 161,100	
					(-)	22,310 ~ 26,700	426,100 ~ 486,200	
은평3지구 · 구파발9-1단지 · 구파발 10-2단지 · 구파발 10-3단지		39㎡	29,770 ~ 31,010	214,400 ~ 239,000	(+)	52,820 ~ 56,690	85,700 ~ 95,600	
		49㎡	45,650	307,200	(+)	78,670	122,800	
	59㎡	54,080 ~ 59,080	346,800 ~ 363,800	(-)	18,260	364,200		
중랑구	신내데시앙	59㎡	48,890	314,300	(+)	82,660	125,700	
					(-)	19,550	375,400	
	신내3지구 · 신내우디안1단지 · 신내데시앙포레	49㎡	46,770 ~ 47,580	323,700 ~ 337,100	(+)	81,570 ~ 83,810	129,400 ~ 134,800	
		59㎡	56,340 ~ 56,650	372,400 ~ 384,300	(-)	18,700 ~ 19,030	382,100 ~ 396,500	
					(+)	96,360 ~ 97,950	148,900 ~ 153,700	
					(-)	22,530 ~ 22,660	442,800 ~ 455,100	
의정부시	상계장암지구(1,2단지) · 수락리버시티1,2단지	39㎡	26,160	204,500	(+)	48,130	81,800	
					(-)	10,460	237,200	
		49㎡	38,160	261,100	(+)	66,220	104,400	
					(-)	15,260	308,800	
		59㎡	53,020 ~ 53,650	339,100 ~ 340,600	(+)	89,620 ~ 90,090	135,600 ~ 136,200	
					(-)	21,200 ~ 21,460	406,100 ~ 406,800	

- 국민임대주택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을 변경(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임대료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7%입니다.
- 위 전환 이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 시점의 임대조건 이율에 따라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 4. 신청 자격

## 가. 공통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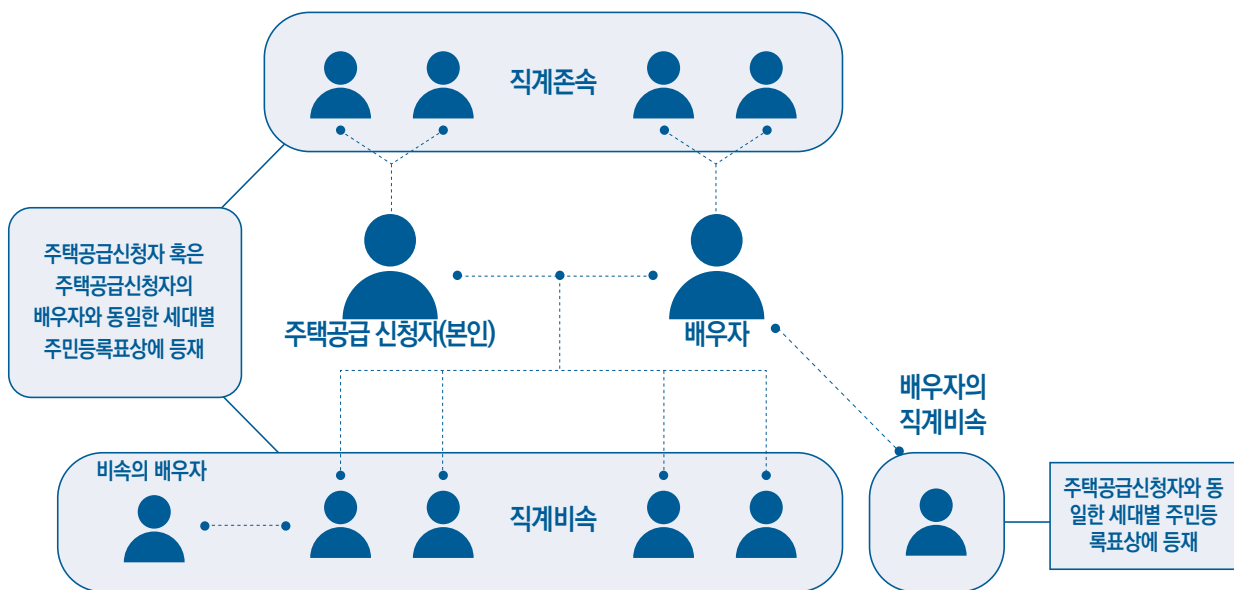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9.26.)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는 생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상계장암지구 1,2단지: 서울특별시 외 의정부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에 거주하는 사람도 신청 가능하며, 상계장암지구 3,4단지는 서울특별시 외 의정부시 거주자도 신청가능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 단, ①또는②의 자녀 및 형제자매의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신청불가 -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 국민 -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지 않는 외국인 -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 외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유의사항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공급신청자 중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세대주는 모집공고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 외 세대구성원(직계존비속, 배우자)이 없는 자를 말하며, 본인과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형제/자매, 동거인 등)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단독세대주(1인 가구)입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로 이루어진 경우(총 2명)에도 단독세대주에 해당되어 전용면적 50㎡를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②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50㎡를 초과하는 주택의 신청이 가능 합니다.
  - 단독세대주 전용면적 제한 기준은 재계약 시에도 적용되는 기준으로, 전용면적 50㎡를 초과하는 주택의 신청자의 경우 공고시점 당시의 2인 이상의 세대구성원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①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하거나, ②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③ 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배우자가 세대분리하여 중복신청하는 경우도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 중 일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① 신청서 상 '임대주택 거주 중 분리예정세대'에 반드시 체크해야하고, ② 심사서류 제출 시 '예비가구구성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③ 입주 전 세대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가점(부양가족 점수 등)은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산정 됩니다. (단, 배우자와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행위가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입주 자격이 무효처리 됩니다.
-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와 2.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 저가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자격요건 상실 시(무주택, 서울시 거주, 소득 및 자산 요건 등)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입주자격 검증

- 주택소유여부, 소득·부동산·자동차 보유기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자산(부동산, 자동차)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기준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2024년 11월 소득이 조회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4년 8월 소득이 아닌 조회된 2024년 11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
  -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 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기준

- **50㎡이하 국민임대주택(29㎡형, 39㎡형, 49㎡형)**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위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퍼센트 이하인 사람
  - **50㎡이상 60㎡이하 국민임대주택(59㎡형)**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한다)
- ※ **소득기준 가산요건**
- 가구원 수에 따른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 20%p 가산
    - 2인 가구 : 10%p 가산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의 유무에 따른 가산항목 및 비율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태아 포함) : 10%p 가산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 20%p 가산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p 가산
- \*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 자녀만 있는 경우 소득 가산은 적용되지 않음

○ [참고]가구원수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가구원수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50%	60%	70%	80%	90%
1인	1,741,482	2,089,778	2,438,075	2,786,371	3,134,668
2인	2,707,856	3,249,427	3,790,998	4,332,570	4,874,141
3인	3,599,325	4,319,189	5,039,054	5,758,919	6,478,784
4인	4,124,234	4,949,080	5,773,927	6,598,774	7,423,620
5인	4,387,536	5,265,043	6,142,550	7,020,057	7,897,564
6인	4,781,641	5,737,969	6,694,297	7,650,626	8,606,954
참고사항	※ 월평균소득은 세전금액으로,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태아(수)는 가구원수에 포함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표의 금액은 가산 전의 금액이므로 신청자 본인의 가산기준에 맞는 금액을 따로 산정하여야 함 ※ 전용면적별 가구원수 및 가산항목에 따른 소득요건은 공고문 24~29쪽을 참조 바람 ※ 소득항목별 세부 조사항목은 공고문 [별표2] 참고				

**■ 자산기준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단위: 만원)

구분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기본	34,500	3,708
10%p 가산	38,000	4,078
20%p 가산	41,400	4,449

※ 자산기준 가산요건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의 유무에 따른 가산항목 및 비율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태아 포함) : 10%p 가산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 20%p 가산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p 가산
- \*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 자녀만 있는 경우 자산 가산은 적용되지 않음

## 5. 입주자 선정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명의만 유효하며,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납입인정회차)으로 선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가능
-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영업일(2024.09.27.)부터 발급 가능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구분	조회방법
인터넷이 가능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서비스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순위확인서 종류선택(일반공급용)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주택관리번호 : 2024-000553

## 가. 일반공급(일반)

구분	입주자 선정방법																												
<b>전용면적 50㎡ 미만</b> (29㎡, 39㎡, 49㎡)	1.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1-1. 선순위(월평균소득의 50%이하) 소득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h style="width: 15%;">가구원수</th> <th style="width: 12.5%;">1인가구 (+20%p)</th> <th style="width: 12.5%;">2인가구 (+10%p)</th> <th style="width: 12.5%;">3인가구</th> <th style="width: 12.5%;">4인가구</th> <th style="width: 12.5%;">5인가구</th> <th style="width: 12.5%;">6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td> <td style="text-align: center;">2,438,075</td> <td style="text-align: center;">3,249,427</td> <td style="text-align: center;">3,599,325</td> <td style="text-align: center;">4,124,234</td> <td style="text-align: center;">4,387,536</td> <td style="text-align: center;">4,781,64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60% <small>((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태아 포함))</small></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3,790,998</td> <td style="text-align: center;">4,319,189</td> <td style="text-align: center;">4,949,080</td> <td style="text-align: center;">5,265,043</td> <td style="text-align: center;">5,737,969</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small>(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또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small></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5,039,054</td> <td style="text-align: center;">5,773,927</td> <td style="text-align: center;">6,142,550</td> <td style="text-align: center;">6,694,297</td> </tr> </tbody> </table>	가구원수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2,438,075	3,249,427	3,599,325	4,124,234	4,387,536	4,781,641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60% <small>((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태아 포함))</small>	-	3,790,998	4,319,189	4,949,080	5,265,043	5,737,969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small>(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또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small>	-	-	5,039,054	5,773,927	6,142,550	6,694,297
	가구원수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2,438,075	3,249,427	3,599,325	4,124,234	4,387,536	4,781,641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60% <small>((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태아 포함))</small>	-	3,790,998	4,319,189	4,949,080	5,265,043	5,737,969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small>(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또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small>	-	-	5,039,054	5,773,927	6,142,550	6,694,297																							



구분	입주자 선정방법					
<b>1-2. 후순위(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 소득기준</b> ※ 선순위 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						
가구원수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3,134,668	4,332,570	5,039,054	5,773,927	6,142,550	6,694,297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태아 포함))	-	4,874,141	5,758,919	6,598,774	7,020,057	7,650,626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9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또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 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	6,478,784	7,423,620	7,897,564	8,606,954
<b>2.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b> ① <b>1순위</b>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지구 및 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곡2지구 6단지, 세곡지구 : [강남구], 광진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li> <li>• 고덕강일2BL 국민임대주택, 강동권역 강일지구, 강일2지구, 고덕강일2·3지구 :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li> <li>• 마곡지구 9단지, 마곡지구, 발산지구 :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li> <li>• 천왕지구, 천왕2지구, 향동지구 :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li> <li>• 중계센트럴파크, 상계장암지구 3,4단지 :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 상계장암지구 3,4단지는 의정부시도 신청가능</li> <li>• 상암2지구, 상암3-8단지 : [마포구], 강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li> <li>• 내곡지구 : [서초구],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용산구</li> <li>• 마장동 임대아파트 : [성동구], 강남구, 광진구, 동대문구, 용산구, 중구</li> <li>• 장월1 :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종로구, 중랑구</li> <li>• 오금지구, 마천지구, 장지지구 위례포레샤인 13,23단지 :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li> <li>• 신정3·4지구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li> <li>• 은평 3지구 :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li> <li>• 신내3지구 : [중랑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li> <li>• 상계장암지구(1,2단지) : [노원구, 의정부시],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li> </ul>						
② <b>2순위</b> : 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b>3.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신청자 중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6.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선정기준”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르며,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청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해당 신청자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b>						

구분	입주자 선정방법					
<b>전용면적 50㎡이상 60㎡미만 (59㎡)</b>	1.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인 가구 +10%p 가산)					
	가구원수	2인가구 (+10%p)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4,332,570	5,039,054	5,773,927	6,142,550	6,694,297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small>(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태아 포함))</small>	4,874,141	5,758,919	6,598,774	7,020,057	7,650,626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90% <small>(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또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small>	-	6,478,784	7,423,620	7,897,564	8,606,954
2.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3.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신청자 중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6.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선정기준”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르며,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청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해당 신청자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						

※ 일반공급(일반) 입주자 선정방법 요약

구분	입주자 선정방법					비고
전용면적 50㎡미만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b>50%이하</b> (1인 70%, 2인 60% 이하)	→ 거주지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사람 (자녀 수가 많은 순)	→ 배점 합산	→ 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 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전산추첨
전용면적 50㎡이상 60㎡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b>70%이하</b> (2인 80% 이하)	→ 주택청약 종합저축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사람 (자녀 수가 많은 순)	→ 배점 합산	→ 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 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	

## 나. 일반공급(주거약자)

구분	입주자 선정방법																												
공통 신청자격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1959.09.26.이전 출생, 당일포함)]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⑦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①~⑦ 중 한 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공급신청자 본인)만 신청 가능																												
전용면적 50㎡미만 (29㎡, 39㎡, 49㎡)	1.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1-1. 선순위(월평균소득의 50%이하) 소득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fe2f3;">가구원수</th> <th style="background-color: #cfe2f3;">1인가구 (+20%p)</th> <th style="background-color: #cfe2f3;">2인가구 (+10%p)</th> <th style="background-color: #cfe2f3;">3인가구</th> <th style="background-color: #cfe2f3;">4인가구</th> <th style="background-color: #cfe2f3;">5인가구</th> <th style="background-color: #cfe2f3;">6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cfe2f3;">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td> <td>2,438,075</td> <td>3,249,427</td> <td>3,599,325</td> <td>4,124,234</td> <td>4,387,536</td> <td>4,781,641</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fe2f3;">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6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태아 포함))</td> <td>-</td> <td>3,790,998</td> <td>4,319,189</td> <td>4,949,080</td> <td>5,265,043</td> <td>5,737,969</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fe2f3;">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또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td> <td>-</td> <td>-</td> <td>5,039,054</td> <td>5,773,927</td> <td>6,142,550</td> <td>6,694,297</td> </tr> </tbody> </table>	가구원수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2,438,075	3,249,427	3,599,325	4,124,234	4,387,536	4,781,641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6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태아 포함))	-	3,790,998	4,319,189	4,949,080	5,265,043	5,737,969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또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	5,039,054	5,773,927	6,142,550	6,694,297
가구원수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2,438,075	3,249,427	3,599,325	4,124,234	4,387,536	4,781,641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6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태아 포함))	-	3,790,998	4,319,189	4,949,080	5,265,043	5,737,969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또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	5,039,054	5,773,927	6,142,550	6,694,297																							

구분	입주자 선정방법					
<b>1-2. 후순위(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 소득기준</b>						
가구원수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3,134,668	4,332,570	5,039,054	5,773,927	6,142,550	6,694,297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태아 포함))	-	4,874,141	5,758,919	6,598,774	7,020,057	7,650,626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9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 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또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 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	6,478,784	7,423,620	7,897,564	8,606,954
<b>2.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b>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는 사람						
② 2순위 : 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b>3.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선정은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공고문 29~30쪽)에 의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곡2지구 4단지, 세곡2지구 6단지, 세곡지구 : [강남구], 광진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li> <li>• 고덕강일2BL 국민임대주택, 강동권역 강일지구, 강일2지구, 고덕강일2·3지구 :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li> <li>• 마곡지구 :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li> <li>• 천왕지구, 천왕2지구, 향동지구 :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li> <li>• 중계센트럴파크 :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종량구</li> <li>• 상암2지구 : [마포구], 강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li> <li>• 내곡지구 : [서초구],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용산구</li> <li>• 마천지구, 오금지구, 위례포레샤인13,23단지 :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li> <li>• 신정3지구, 신정4지구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li> <li>• 신내3지구 : [중량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li> </ul>						

구분	입주자 선정방법					
<b>전용면적 50㎡이상 (59㎡)</b>	1.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인 가구 +10%p 가산)					
	가구원수	2인가구 (+10%p)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4,332,570	5,039,054	5,773,927	6,142,550	6,694,297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태아 포함))	4,874,141	5,758,919	6,598,774	7,020,057	7,650,626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9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또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6,478,784	7,423,620	7,897,564	8,606,954	
2.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3.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선정은 “아래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선정기준”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르며,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청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해당 신청자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						
※ 일반공급(주거약자) 입주자 선정방법 요약						
<b>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b>	구분	입주자 선정방법				비고
	전용면적 50㎡미만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1인 70%, 2인 60% 이하)	→ 거주지 순위	→ 배점 합산	→ 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전산추첨
전용면적 50㎡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2인 80% 이하)	→ 주택청약 종합저축 순위	→ 배점 합산	→ 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		

구분	입주자 선정방법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b>※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b>			
	구분	3점	2점	1점
	① 부양 가족수 (태아수 포함, 신청자 제외)	3인이상	2인	1인
	②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 (만19세 이후)	5년이상	3년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③ 사회취약계층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자에 한함) 전원에 해당]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 인정회차)	60회이상	48회이상 60회미만	36회이상 48회미만
	⑤ 장애인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자에 한함) 전원에 해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⑥ 감점 산정기준 : 2011.11.04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의거 국민임대주택 계약한 사람에 해당함.			
	감점 기준			감점 점수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5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3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단, ①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②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①+②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며, 가구원수가 감소된 경우에는 작은 면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인정)				
- ③사회취약계층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수급자를 말함				
- ③사회취약계층의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0호, 생계·의료급여이외의 수급자는 동법 7조의 이외 수급자를 말함				
- 상기 가점기준표 중 ①부양가족수, ②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 ⑥감점적용 대상자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6.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과 동일함				

## 다. 우선공급

### 배정호수

단지	신청유형	계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장기 복무 제대 군인	복합이 탈주민	중소 기업 근로자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65세 이상 고령자	비 정규직 근로자	납북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등, 범죄피해자, 파독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등록포로, 해외거주 재외동포	다자녀 가구	국가 유공자 등	영구 임대 자격 상실자	비닐 간이 공작물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입주 세입자	신혼 부부 ·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합계		142	4	4	3	4	7	4	4	7	7	10	23	7	4	4	50
고덕	29㎡	22	1	1	1(1)	1(1)	2	1	1	2	2		6(3)	2	1	1	
강일	39㎡	43	1	1	1(1)	1(1)	2	1	1	2	2		7(3)	2	1	1	20
2	49㎡	77	2	2	1(1)	2(1)	3	2	2	3	3	10	10(5)	3	2	2	30

\*() 세대는 기관추천우선공급 대상자 중 예비추천자 물량임

## 우선공급 세부항목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공통	위 "4. 신청자격"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노부모 부양자 (제2호 나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1959.09.26.이전 출생(당일포함)]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사람. 부양여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고, 피부양자(노부모)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도 무주택이어야 함.
장애인 (제2호 나목)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 단, 장애정도가 심한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정도의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2호 나목)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사람
북한 이탈주민 (제2호 나목)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사람
중소기업 근로자 (제2호 나목)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사람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사람(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신혼부부 (제2호 나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제2호 나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해당구청, 주민센터에 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사람)
65세이상 고령자 (제2호 나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1959.09.26.이전 출생(당일포함))의 고령자
비정규직 근로자 (제2호 나목)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사람
납북피해자 (제2호 나목)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제2호 나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소년소녀 가정 등 (제2호 나목)	소년·소녀가정으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
범죄피해자 (제2호 나목)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제출)
파독근로자 (제2호 나목)	1963.12.21부터 1977.12.31까지의 기간 중에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 중 간호사, 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성폭력피해자 (제2호 나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등록포로 (제2호 나목)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해외거주 재외동포 (제2호 나목)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자녀 가구 (제2호 다목)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 2005.09.27.이후 출생(당일포함))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인정)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말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미성년자녀는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거 산정하되 이·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인정)
국가 유공자 등 (제2호 라목)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사람 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⑥ 종전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 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자 (제2호 마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계약자에 한함)중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영구임대주택 입주여부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제2호 바목)	① 비닐, 부직포 등으로 건축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제공되는 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13조 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②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사람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 다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의 자격(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자격)으로 1회 이상 우선공급(계약)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제2호 아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한 차례로 한정함)

## ■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우선공급은 별도의 순위가 적용되므로, 아래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위 “4. 신청자격”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입주자 선정방법																												
	<p>① <b>신혼부부</b>: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2,555일)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p> <p>② <b>예비신혼부부</b>: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p> <p>③ <b>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b>(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p> <hr/> <p>-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심사 시 임신 중인 자녀수는 세대원에 포함</p> <p>-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이후 출생신고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관계로 인정)로 판단하며,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이 적용됨</p> <p>- 임신 중인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및 태아 수가 확인 가능한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 제출)로 신청자격 여부 확인(임신주수 및 태아 수 기재된 진단서 제출하되 태아 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p> <p>- 재혼한 경우에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로 인정</p> <p>-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혼인기간 산정</p>																												
<p><b>입주자 선정순위</b></p>	<p>① <b>1순위</b>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li> <li>-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li> <li>-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li> </ul> <p>② <b>2순위</b> : 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p>																												
<p><b>동일순위내 경쟁시 입주자선정</b></p>	<p>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청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해당 신청자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p> <p><b>※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배점기준표</b></p> <table border="1" data-bbox="290 1296 1476 1792"> <thead> <tr> <th>구분</th> <th>3점</th> <th>2점</th> <th>1점</th> </tr> </thead> <tbody> <tr> <td>가구소득</td> <td>-</td> <td>-</td> <td>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2인 60%이하)</td> </tr> <tr> <td>미성년자녀수 (태아를 포함한다)</td> <td>3인이상</td> <td>2인</td> <td>1인</td> </tr> <tr> <td>서울시 연속거주기간 (만19세 이후)</td> <td>3년이상</td> <td>1년이상 3년미만</td> <td>1년미만</td> </tr> <tr> <td>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td> <td>24회이상</td> <td>12회이상 24회미만</td> <td>6회이상 12회미만</td> </tr> <tr> <td>현 배우자와 혼인기간 ※ 신혼부부만 적용</td> <td>3년이하</td> <td>3년초과 5년이하</td> <td>5년초과 7년이하</td> </tr> <tr> <td>자녀의 나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가장 어린 자녀기준으로 적용) ※ 한부모가족만 적용</td> <td>만2세 이하</td> <td>만3세 또는 만4세</td> <td>만5세 또는 만6세</td> </tr> </tbody> </table>	구분	3점	2점	1점	가구소득	-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2인 60%이하)	미성년자녀수 (태아를 포함한다)	3인이상	2인	1인	서울시 연속거주기간 (만19세 이후)	3년이상	1년이상 3년미만	1년미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이상	12회이상 24회미만	6회이상 12회미만	현 배우자와 혼인기간 ※ 신혼부부만 적용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자녀의 나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가장 어린 자녀기준으로 적용) ※ 한부모가족만 적용	만2세 이하	만3세 또는 만4세	만5세 또는 만6세
구분	3점	2점	1점																										
가구소득	-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2인 60%이하)																										
미성년자녀수 (태아를 포함한다)	3인이상	2인	1인																										
서울시 연속거주기간 (만19세 이후)	3년이상	1년이상 3년미만	1년미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이상	12회이상 24회미만	6회이상 12회미만																										
현 배우자와 혼인기간 ※ 신혼부부만 적용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자녀의 나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가장 어린 자녀기준으로 적용) ※ 한부모가족만 적용	만2세 이하	만3세 또는 만4세	만5세 또는 만6세																										
<p><b>유의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li> <li>- 대표신청자를 기준으로 우선공급 가점 및 일반공급 전환 시 가점사항이 적용되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향후 제출할 예비신혼부부 가구구성 확인서를 바탕으로 판단하며, 이는 신청자격 검증대상임</li> <li>-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불가 시 공급계약이 취소됨</li> </ul>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자격 신청자가 임신 중인 경우, ‘미성년자녀수’는 태아 수만큼 가점이 인정되나 자녀의 나이는 출산 이후 등본 등재 시 적용되므로 가점을 받을 수 없음</li> <li>-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 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됨</li> <li>· <b>임신부부</b> : 출산증명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 유산·낙태관련 진단서(임신주수 기재분)제출</li> <li>· <b>입양부부</b>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제출</li> </ul>

- ※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아목(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대상자는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르며, 대상자 증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 청약 전 반드시 자격서류 발급처에서 해당 신청관련 자격서류를 발급받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부적격처리 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우선공급 자격 해당여부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며,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우선공급대상자로 인정** 됨
- ※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컷라인 미달, 해당자격 입증 불가자 등)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동일단지, 동일면적의 일반공급 모집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며, 우선공급대상자는 청약신청 시 해당 우선공급항목을 체크하여 신청하여야 함
-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등에서 선정하여 통보한 순위에 의하되(예비추천자 포함), 반드시 별도로 우리공사 청약신청기간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로 선정 불가하며, 예비추천자도 반드시 청약신청기간에 청약신청을 해야 대상자가 됨)
-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배정호수의 괄호 안 숫자는 예비추천인원으로 기본추천자가 심사과정 중 걸격되는 경우 배정호수 내에서 예비추천자가 순번에 따라 심사대상이 되며, 걸격자 보충 후 남은 예비추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 우선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는 일반공급 대상 세대로 전환됨
- ※ 장애인, 고령자 등의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신청자라도 **우선공급으로 신청한 경우 주거약자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공급되오니 주거약자 편리 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원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주거약자 주택’을 신청해야함**

## I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서

구 분	면적구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우선공급 ※ 적용 제외대상 항목 : 기관추천대상자, 장애인,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전용 50㎡ 미만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1인 70%, 2인 60% 이하)	→ 배점 합산 →	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전산추첨
장애인 우선공급	전용 50㎡ 미만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1인 70%, 2인 60% 이하)	장애 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 합산 →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우선공급	전용 50㎡ 미만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2인 60% 이하)	→ 순위 →	배점 합산 →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	

※ 기관추천대상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 6.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 일반공급(주거약자용 주택 제외), 우선공급(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은 제외) 가점기준

※ ④, ⑦, ⑨ 가점항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의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시 제외함

구 분	3점	2점	1점
① 공급신청자 나이(만나이 기준)	50세이상	40세이상 5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② 부양가족수(태아 포함, 신청자 제외) ※ 하단 부양가족 설명 참조	3인이상	2인	1인
③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만19세 이후)	5년이상	3년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④ 만65세 이상[1959.09.26.이전 출생(당일포함)]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까지 계속해서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3점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노부모)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⑤ 미성년[만19세 미만, 2005.09.27. 당일포함) 이후 출생]자녀(태아수 포함)의 수	3자녀이상	2자녀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 인정회차)	60회 이상	48회이상 60회미만	36회이상 48회미만
⑦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⑧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252일)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 : 3점			
⑨ 사회취약계층에 속한 사람 : 3점 (세부내용은 아래의 ※ 사회취약계층 가점사항 참조)			
⑩ 감점 산정기준 : 2011.11.04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의거 국민임대주택 계약한 사람에 해당함.			

감 점 기 준	감 점 점 수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5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3

※ 신청자 및 배우자(분리배우자 포함)가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관계법령에 의한 임차권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인 포함)에 한하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감점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자 기준으로 감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갱신계약은 제외)

※ 단, “①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②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①+②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며, 가구원수가 감소된 경우에는 작은 면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인정)

○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 성년(만19세)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특별시 최종 전 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주민등록표 초본 상 전입일 및 변동일을 기준으로 함. 말소된 경우 말소(거주불명등록 등)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상계장암지구 1,2단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은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 포천시까지 모두 서울시로 보아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으로 점수 인정하며, 상계장암지구 3,4단지의 경우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서울시 거주기간으로 산정함

○ 부양가족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제외한 자격검증대상)전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 단, 만19세 미만[2005.09.27.이후 출생(당일포함)] 또는 만60세 이상[1964.09.26.이전 출생(당일포함)]인 사람에 한함.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 미성년(만19세 미만) 자녀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하되, 이·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미성년자녀로 인정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여부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해야 하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의 분리배우자 포함)도 무주택이어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의 분리배우자'도 주택소유 조회 대상이므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동의를 받아야 함.

○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확인 : ①중소기업확인서상 주업종, ②사업자등록증상 업태, ③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적에 '제조업' 기재 여부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기준(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종된 사업장은 제외)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그 제조업체 직장가입자에 한함.

○ 사회취약계층 가점사항(아래 항목 중 1개 항목만 인정)

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된 자에 한함) 전원에 해당]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1인 90%, 2인 80%)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단, 보훈청에서 수권자로 인정하는 자에 한함)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1인 90%, 2인 80%)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1인 90%, 2인 80%)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7. 1~4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서울시장의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8.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동일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자에 한함,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하는 사람으로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사람
9.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 또는 동법 7조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계약자 본인만 해당)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 유의사항

임신 중인 자녀(입양포함)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아 당첨(예비자포함)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입증자료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 **상기 가점 및 감점사항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청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하며, 해당 신청자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전산추첨에 의함.**

# 7. 신청접수 일정

## 청약신청 세부일정

대상자	접수일정	접수방법
<p>○ 공급(일반, 주거약자) <u>선순위</u> 자격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미만(29㎡, 39㎡,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사람 (1인의 경우 70% 이하, 2인의 경우 60% 이하)</li> </ul> </li> <li>- 50㎡이상 60㎡이하(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사람(2인의 경우 80% 이하)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단독세대주 제외)</li> </ul> </li> </ul> <p>○ 우선공급 자격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 신청자격”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고문 30~34쪽의 각 우선공급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li> </ul>	<p>2024.10.07.(월) 10:00 ~ 2024.10.11.(금) 17:00 ※ 10.09.(수) 국경일은 접수불가</p>	<p><b>인터넷청약</b> : www.i-sh.co.kr/ app</p>
<p>○ 공급(일반, 주거약자) <u>후순위</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미만(29㎡, 39㎡,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초과 70%이하인 사람 (1인의 경우 90% 이하, 2인의 경우 80% 이하)</li> </ul> </li> <li>- 50㎡이상 60㎡이하(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사람(2인의 경우 80% 이하)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미만 납입한 사람(미가입자 포함 및 단독세대주 제외)</li> </ul> </li> </ul> <p>(※ 후순위 접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자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p>2024.10.08.(화) ~ 10.11.(금) 10:00 ~ 17:00 ※ 10.09.(수) 국경일은 접수불가</p>	<p><b>방문청약</b> :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p>
<p>○ 공급(일반, 주거약자) <u>후순위</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미만(29㎡, 39㎡,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초과 70%이하인 사람 (1인의 경우 90% 이하, 2인의 경우 80% 이하)</li> </ul> </li> <li>- 50㎡이상 60㎡이하(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사람(2인의 경우 80% 이하)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미만 납입한 사람(미가입자 포함 및 단독세대주 제외)</li> </ul> </li> </ul> <p>(※ 후순위 접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자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p>2024.10.24.(목) 10:00 ~ 17:00</p>	<p><b>인터넷청약</b> : www.i-sh.co.kr/ app</p>

※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 전형 대상자의 경우 면적별 선순위 조건을 확인하시어 해당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은 순위별 최종 청약일 마감시간(17:00)까지 청약접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단, 모집호수 10호 미만 주택의 경우 300%)

※ 후순위자 신청가능여부는 후순위 신청일 오전 9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8. 신청접수 안내

### 인터넷 청약안내

#### “인터넷 청약, 스마트폰으로도 10분에 OK!”, “24시간 가능한 인터넷 청약” - 각 순위별 최종청약일 마감시간(17:00)까지만 운영 -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국민임대주택은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로만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 인터넷 청약 신청을 위해 사전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9종) 중 1개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본 청약 시 공동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주)]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청약 시 간편인증서는 네이버, 카카오, 패스(PASS), 페이코, 삼성패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SOL),뱅크샐러드에서 발급받은 간편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총9종)
- 공사가 이용 중인 실명인증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간편인증서(9종)로 실명인증이 일시적으로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기간

- 선순위 : 2024.10.07.(월) 10:00 ~ 2024.10.11.(금) 17:00(※10.09.(수) 국경일은 접수불가)
- 후순위 : 2024.10.24.(목) 10:00 ~ 17:00

※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자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10월 24일 접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 신청가능단지는 후순위 청약접수일 오전 9시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청약마감 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순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로그인 (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 - 공고선택	→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가점사항 입력	→ 인증서 로그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 ※ 인터넷 청약 유의사항

-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해당순위 신청 마감일시까지만 가능하니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완료 후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한 사항 등을 포함한 모든 작성 내용은 절대 변경 불가능 하므로, 최종확인 완료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도 변경 불가)

## 방문청약 안내

- 이번 입주자 모집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한 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65세이상) 등 정보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방문접수를 진행**합니다.  
방문접수 시 신청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몰릴 경우 장시간(5시간 이상)의 대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인터넷 접수를 활용하여 주시고 방문접수 시 대기시간을 고려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신청자격 (일반공급 전형에 해당하며, 우선공급 전형은 각 자격조건(공고문 30~34쪽))을 확인바람)

### [선순위 조건]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 :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사람 (1인 70%, 2인 60% 이하)
- 전용면적 50㎡이상 주택 :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사람(2인 80% 이하)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4.신청자격 참고

- 단독세대주(1인가구)는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 외 세대구성원(직계존비속, 배우자)이 없는 자를 말하며, 본인과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형제, 자매)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단독세대주에 해당함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기간 : 2024.10.08.(화) 10:00 ~ 2024.10.11.(금) 17:00(※10.09.(수) 국경일은 접수불가)

2024.10.08.(화) : [강남구, 송파구, 강서구, 성동구, 노원구, 의정부시 내 단지]

2024.10.10.(목) : [강동구, 구로구 내 단지]

2024.10.11.(금) : [성북구, 마포구, 서초구, 양천구, 은평구, 중랑구 내 단지]

반드시 신청 단지의 방문청약 접수일을 확인하여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 구비서류 : 1)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 2)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 ※ 방문접수 유의사항

- 방문접수는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하여 공사에서 인터넷 접수를 대행하는 접수 방식이며, 청약 신청인원이 과도하게 몰릴 경우 청약과 관련한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어 가점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가져오시면 원활한 방문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도로명 주소, 서울시 최종 전입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및 납입회차(가입 은행에서 순위확인서 발급 통해 확인 가능)등을 반드시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 수** : (본인제외)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서울시 최종 전입일** : 주민등록초본 상 서울시에 최종전입한 날짜로 확인. 주민등록초본 지참 시 확인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차** : 가입은행 방문 또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순위(가입)확인서 발급하여 납입인정회차 확인가능

- 신청 접수 후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지·주택형·가점사항 등 본인이 기재한 내역에 대해 변경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장내 혼잡을 막기 위해 청약신청자 외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입장이 제한됩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대기시간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하신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으며 **접수완료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이 기재한 내용에 대한 수정이 불가합니다.**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납입인정회차)으로 선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저축 가입은행 방문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확인용 공사에서 일괄 조회하므로 순위확인서 제출 불요
- 인터넷·모바일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 또는 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 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 - 인터넷청약 연습하기에서 확인가능)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청약한 것을 PC로 취소 후 다시 청약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신청자가 잘못 입력 또는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청자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자세하게 확인하시길 바라며, 청약 신청에 필요한 신청자격, 청약은행, 청약인정회수, 신청순위, 월평균소득, 배점세부항목 등을 해당 서류를 통해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1-1) 착오기재가 다수 발생한 \*서울시 최종전입일 산정 방식

전입일	변동일	등초본상 거주지
2012. 1. 4.	2012. 1. 5.	서울시 구로구 A아파트
2014. 7. 25.	2014. 7. 23.	서울시 강서구 B오피스텔
2015. 12. 14.	2015. 12. 17.	서울시 강남구 C빌라

- 2012년 1월 4일 서울시로 전입 후 같은 서울시 내에서 다른 자치구로 2014년 7월 25일, 2015년 12월 14일 전입하여 현재까지 서울시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서울시 최종전입일은 **2012년 1월 4일**입니다. (단, 등초본상 전입일, 변동일 중 빠른 날짜부터 인정합니다.)

### (예시1-2) 착오기재가 다수 발생한 \*서울시 최종전입일 산정 방식

전입일	변동일	등초본상 거주지
2012. 1. 4.	2012. 1. 5.	서울시 구로구 A아파트
2014. 7. 25.	2014. 7. 2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2015. 12. 14.	2015. 12. 17.	서울시 강남구 C빌라

- 2012년 1월 4일 서울시로 전입 후 서울시 외 지역으로 2014년 7월 25일 전입하였다가 2015년 12월 14일 다시 서울시로 재전입하여 현재까지 자치구 상관없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시 최종전입일은 **2015년 12월 14일**입니다. (단, 등초본상 전입일, 변동일 중 빠른 날짜부터 인정합니다.)

※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시 최종 전입일부터)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주민등록표 초본상 전입일 및 변동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말소(거주불명등록 등) 또는 전출한 경우 재등록, 재전입일부터 기산합니다.

## 9.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안내

- 신청자가 청약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모집세대수의 상위 200%~300%내외(세부비율 하단 참조)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발표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하단의 심사 서류 제출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내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09.26.)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될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제출한 서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회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필요시 보완서류 제출 요청)하여 당첨자 및 예비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11.08.(금) 16:00 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app>)에서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 서울주택도시공사 ARS(1600-3456)로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 서류심사대상자에 한하여 문자알림 예정

###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4.11.18.(월) ~ 2024.11.20.(수)

- 제출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 연락 없이 결격 처리하므로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심사대상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는 홈페이지와 SMS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SMS 미확인 또는 통신사 장애로 인해 SMS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일정에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심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대상자의 경우 별도로 SMS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 ■ 심사서류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제출 [2024.11.20.(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일반우편, 택배, 방문접수는 불가합니다.

### ■ 심사서류 제출주소 : (06336)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공급부 국민임대주택 담당자

###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09.26.)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

### ■ 서류심사대상자 선정비율

- 일반공급
  - 기본기준 : 모집세대수의 200% 내외
  - 모집세대수가 10호 이하인 경우 : 모집세대수의 300% 내외
- 우선공급: 신청자 수에 따라 탄력적 비율 선정
- ※ 커트라인 내에 동점자인 경우 전원 서류심사대상자 선정

# 10. 심사서류 제출안내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09.26.)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기존 발급분 제출가능)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셨더라도 등기로 공동서류를 포함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결격'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밝혀질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공통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발급처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li> </ul>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홈페이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신청자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특정X, 일반X, 상세만 인정)</li> <li>•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li> </ul>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li> <li>※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도 함께 제출(발급방법 동일)</li> </ul>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동의란(2곳) 모두 성명을 정자로 작성(사인, 도장 불가)</li> <li>-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li> <li>- ①만65세 이상 노부모부양 가점, ②사회취약계층 가점 중 “노부모부양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u>피부양자의 배우자</u>도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서명) 받아 제출</li> </ul> </li> <li>※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됨</li> <li>※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인증서로 동의 시 원본미제출 가능하나 스캔으로 올릴 시 반드시 원본제출</li> </ul>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우편발송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 정보)제공 동의서		

##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대상자만 제출)

구비서류	비 고	발급처
임신진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된 원본에 한하며, 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li>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b>임신진단서(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b>에 한하며, 임신확인서 및 진료내역 확인서는 제출 불가</li> </ul>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외국인인 경우 <b>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b>(또는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b>주민등록표등본</b> 제출</li> </ul>	행정복지 센터 및 정부24 홈페이지
예비가구 구성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부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로 당첨 이후 세대 분리예정인 신청자</li> </ul>	서울주택 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우편발송

##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주 거 약 자	제 출 서 류	발 급 처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증명서 (등록일 반드시 기재)</li> </ul>	행정복지 센터 및 정부 24 홈페이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유공자 확인원</li> </ul>	국가보훈부 각 보훈지청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7.1이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li> <li>'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li> </ul>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18민주유공자 확인원</li> </ul>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li> </ul>	
총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li> </ul>	

## 우선공급 대상자 준비서류(대상자만 제출)

우선공급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노부모 부양자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한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피부양자의(노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장애인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업종(제외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갬블링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직할 경우 3년 이상)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 중소기업장기근속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에 서류 제출기간 내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미리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1357)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우선공급 대상여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발급처로 문의	• 제출 서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발급처〉 • 기간제, 파견 근로자 - 현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일용근로자 -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납북피해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 통일부 (이산가족과)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6개월이상 입소한 피해자로서 퇴소일부터 2년이내인 사람 -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퇴소일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	• 해당기관 (시,군,구청)
소년소녀 가정 등	소년소녀가정으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또는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	• 시장, 구청장 추천서	• 거주지 시 (구)청

우선공급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소지관할 지방검찰청</li> </ul>
파독 근로자	1963.12.21.부터 1977.12.31까지의 기간 중에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 중 간호사, 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파독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입국사실증명서</li> <li>※ 파독근로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개인별 별도 통지)드릴 수 있으며 요청 기한 내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되는 사람에 한하여 파독근로자 우선공급자격을 인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복지센터</li> </ul>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입소확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주지 시(구)청</li> </ul>
등록포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귀환용사증 사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방부</li> </ul>
해외거주 재외동포	해외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한 재외동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거주 증빙서류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이주신고서 등)</li> <li>귀화한 경우 (국적취득사실증명서)</li> <li>재외국민의 경우(영구귀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무부</li> <li>외교부</li> </ul>
영구임대 주택 자격상실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계약자) 중 자격상실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사실증명원</li> <li>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중지, 상실) 통지서(사회복지서비스 또는 급여중지일 표시하여 발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행정복지센터</li> </ul>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지구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 받은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 각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양식</li> </ul>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허가건축물등 세입자 확인각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양식</li> </ul>

우선공급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	공통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발급)	• 행정복지센터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한부모가족	• (필수) 자녀의 기본증명서 • (해당자)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 행정복지센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예비신혼부부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이전 확인용, 상세증명서로 발급) •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공사양식) • 예비 가구구성 확인서(공사양식) • 위임장(공사양식) -위임자 : 예비배우자 -수임자 : 대표신청자 •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의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입주 시 제출〉 • 혼인 후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증명서): 입주 시 까지 미제출 시 입주불가, 당첨 및 계약무효처리 됨	• 행정복지센터 • 공사 양식

※ 우선공급 대상자 중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항목 신청자의 자격증명서는 공사에서 국가보훈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 의뢰하여 자격 확인 예정 (단, 기타서류는 서류제출 기간 내 반드시 제출)

※ 위 제출서류이외에도 서류심사 상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일부 서류의 경우 발급과정에서 수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준비

## 가점대상자 준비서류(해당자만 제출)

가 점 대 상 자	제 출 서 류	발 급 처
①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한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부양자(노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li> </ul>	행정복지센터
②중소제조업체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중소제조업체가입분)</li> <li>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li> <li>제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li> <li>-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불가 시 점수인정이 되지 않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건강보험공단</li> <li>해당 직장</li> <li>중소벤처기업부 (☎1357)</li> <li>(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등기소</li> </ul>
③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근로일수 252일을 1년으로 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근로자경력증명서</li> <li>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li> </ul>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li> </ul>	행정복지센터
-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 90%, 2인 80%)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 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p><b>제출서류 없음</b></p> <p>(공사에서 관할 보훈지청으로 직접 의뢰하여 가점가능여부 공문확인 예정)</p>	
-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li> </ul>	여성가족부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부모가족 증명서</li> </ul>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홈페이지
-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 90%, 2인 80%)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구청</li> <li>정부24 홈페이지</li> <li>북한이탈주민포털 (hanaportal.unikorea.go.kr)</li> </ul>
-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內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 (공고일 이전 생계·의료급여 등을 신청하여 결정사항 통지서를 수령해야 함)</li> </ul>	행정복지센터
- 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 90%, 2인 80%)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천서(자치구 확인)</li> <li>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복지시설의 장</li> <li>해당 구청</li> </ul>



가점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권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의 수급자 증명서</li> <li>• (차상위계층) 복지대상 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 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ul>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서울시장의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해당증빙서류	해당 기관
⑤ 생계급여, 의료급여 외의 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외의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⑥ 차상위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ul>	행정복지센터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책정기간 기재)	국민건강보험공단
⑦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계약자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계약서 사본</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1면 사본</li> </ul>	
⑧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등록일 반드시 기재)	행정복지센터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 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는 가점대상 확인서류제출 기간 이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여부확인을 위하여 자산소명 기간에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일부 서류의 경우 발급 과정에서 여러 날이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동호추첨 및 당첨자발표

## 동호추첨

- 주택의 동·호는 신청유형(전용면적)별로 동별, 층별, 향별, 타입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추첨하며, 지구단위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단지 또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됩니다.
- 재공급 단지는 **3. 공급현황**에 기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단 선발인원은 공고일 이후 입주자 퇴거 등 공가 상황 변동에 따라 명시된 인원보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로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며, 약 2개월 주기의 예비당첨자 발표를 통해 공급합니다. (**예비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자 자격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 공급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추가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세대수를 포함하여 해당주택의 예비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자 공급 일정은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로 당첨자 계약률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 당첨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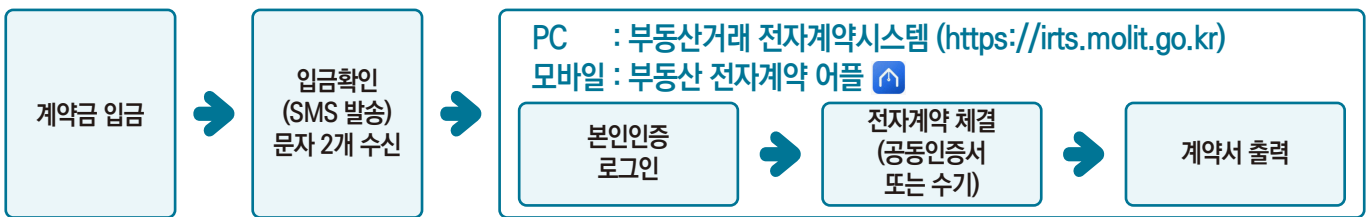
- **당첨자발표 : 2025.03.28.(금) 16:00 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 서울주택도시공사 ARS 당첨자 조회 (1600-3456)
- ※ 당첨자 발표 개시 전 조회 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니, 반드시 당첨자 발표 이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 ARS조회 시 반드시 ‘당첨자’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심사대상자’로 조회 시 조회되지 않음)
- ※ 당첨자 발표의 경우 홈페이지와 SMS(미당첨의 경우 발송하지 않음)로 발표하므로, SMS 미확인 또는 통신사 장애로 인해 SMS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당첨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심사과정에서 서류미제출, 신청자격 결격, 감점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서류 등의 심사 없이 당첨자(예비자)로 발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 시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관련 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후 적합한 당첨자(예비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신청 시의 신청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개인정보 변경 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12. 계약일시 · 장소 및 구비서류

## 계약일시

- 2025.04.09.(수) ~ 2025.04.11.(금)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온라인 전자계약 및 방문계약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  
 ※ 온라인 및 방문계약 일정은 계약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

## 온라인 전자계약 안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동안 업무시간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에 정보가 전송되는 시간이 다소 걸리므로 입금 후 약 1시간 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①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문자 및 ②한국부동산원의 전자계약서 구성완료 문자, 즉 2번의 문자 수신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 공사로 내방하여 방문계약을 해야 합니다.

## 방문계약 안내

- 방문 계약 장소에 계약인원이 몰릴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가정, 직장에서 인터넷/모바일을 이용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계약 구비서류
  - 계약체결은 신청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리인을 통해 계약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는 당첨자 발표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본인 내방 시	대리인 내방 시(배우자, 직계가족 포함)
① 계약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② 계약자 도장(또는 서명 가능)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위임장(공사 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신형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① 계약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② 계약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③ 위임장(공사 양식) ④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신형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 계약금을 납부하였다도 계약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방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이 취소되며, 납부하신 계약금은 환불 처리됩니다.

# 13.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li> <li>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전용면적 50㎡를 초과하는 주택의 신청자는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2인 이상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li> <li>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li> <li>(갱신 시) 입주자자격요건(소득)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요건, 총자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단, 소득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부동산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만 재계약이 가능하며 2회부터는 퇴거됨. 자동차의 경우 기준가액 초과 시 재계약이 불가함)</li> <li>*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li> </ul> <table border="1" data-bbox="272 927 1481 1323"> <thead> <tr> <th data-bbox="272 927 699 1025"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th> <th colspan="2" data-bbox="699 927 1481 969">할증비율</th> </tr> <tr> <th data-bbox="699 969 1062 1025">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th> <th data-bbox="1062 969 1481 1025">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72 1025 699 1070">10%이하</td> <td data-bbox="699 1025 1062 1070">100%</td> <td data-bbox="1062 1025 1481 1070">110%</td> </tr> <tr> <td data-bbox="272 1070 699 1115">10%초과 30%이하</td> <td data-bbox="699 1070 1062 1115">110%</td> <td data-bbox="1062 1070 1481 1115">120%</td> </tr> <tr> <td data-bbox="272 1115 699 1160">30%초과 50%이하</td> <td data-bbox="699 1115 1062 1160">120%</td> <td data-bbox="1062 1115 1481 1160">140%</td> </tr> <tr> <td data-bbox="272 1160 699 1323"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동차가액을 제외한 자산기준 초과</td> <th colspan="2" data-bbox="699 1160 1481 1211">할증비율</th> </tr> <tr> <td colspan="2" data-bbox="699 1211 1481 1323">140% *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이며, 자동차가액이 초과되는 경우 재계약 불가함</td> </tr> </tbody> </table>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동차가액을 제외한 자산기준 초과	할증비율		140% *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이며, 자동차가액이 초과되는 경우 재계약 불가함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동차가액을 제외한 자산기준 초과	할증비율																			
	140% *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이며, 자동차가액이 초과되는 경우 재계약 불가함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하며, 입주자격 유지조건을 회피할 의도로 해당 주택에 실제 입주한 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li> <li>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①1주택을 인터넷과 방문 등으로 중복신청하거나 ②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임대주택을 중복 신청할 경우 ③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li> <li>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 중 일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①신청서 상 '임대주택 거주중 분리예정세대'에 반드시 체크해야하고, ②심사서류 제출 시 '예비가구구성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③입주 전 세대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가점(부양가족 점수 등)은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단, 배우자와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li> <li>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li> </ul>																			
공급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무효 처리합니다.</li> </ul>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무효 처리합니다.</li> <li>신청 이후 기재한 사항에 대한 취소 또는 정정은 불가합니다. <b>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b>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b>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b> 바랍니다.(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신청서 착오작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li> </ul>																			

관련항목	유의사항
<p><b>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 등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li> <li>• <b>당첨자의 인적사항 변경(개명, 연락처 및 주소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 변경 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b></li> <li>•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li> </ul>
<p><b>당첨 및 계약취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당첨자 발표 전·후에 주택소유(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부동산 및 차량소유, 소득입증, 가점관련 서류, 심사서류 제출 기간 내 관련서류 미제출 등 입주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관련사실의 입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탈락 및 계약 취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당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자가 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됩니다.</b></li> <li>•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b>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에서 제외됩니다.</b></li> <li>• <b>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 시까지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전용면적당 최소 세대원수 기준, 서울시 계속거주, 자산 및 자동차요건 충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b></li> <li>• <b>당첨자 발표 이전에 분양권 등의 소유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b></li> <li>• <b>태아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로 인정받아 당첨자(예비자)가 된 자가 입주 시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의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b></li> <li>• <b>심사기간 중 신청자가 사망하거나, 합격자 발표 후 당첨자(예비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계약 전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당첨자 지위는 자동 삭제됩니다.</b></li> <li>• <b>서류심사 대상자 및 당첨자 발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당첨제외 또는 계약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발표예정일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li> </ul>
<p><b>기타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 4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4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입주 후에도 전대 확인 시 퇴거 조치함)</b></li> <li>• <b>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입주 자격이 무효처리 됩니다.</b></li> <li>• <b>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b></li> <li>• <b>입주 시 잔금 완납 및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b></li> <li>• <b>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b></li> <li>• <b>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b></li> <li>• <b>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공사홈페이지 공고내용, 공사에서 배부하는 공고(안내)문 등을 따릅니다.</b></li> </ul>

# 14. 단지별 상세주소 안내

- 금회 공급단지는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공급되는 모든 단지에 대하여 **전자책**을 공개하오니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 정보’ 클릭 후 메뉴상 ‘전자팸플릿’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잔여공가 공급단지에 대한 전자책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작된 것으로 이후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내용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현장 주변여건을 확인하여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별 상세 주소

자치구	지구명	단지명	소재지 주소(서울특별시)	난방방식
강남구	세곡2지구	세곡2지구 4단지	강남구 자곡로 260	개별난방
		세곡2지구 6단지	강남구 밤고개로26길 50	
		세곡2지구 8단지	강남구 밤고개로27길 20	
	세곡지구	강남신동아파밀리에1단지	강남구 현릉로590길 100	개별난방
		강남신동아파밀리에2단지	강남구 현릉로590길 10	
		세곡리엔파크3단지	강남구 현릉로590길 11	
		세곡리엔파크4단지	강남구 현릉로590길 88	
	강남데시앙파크	강남구 현릉로590길 63		
강동구	강동권역 강일지구	강일리버파크1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3가길 25	지역난방
		강일리버파크2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7길 68	
		강일리버파크3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3길 40	
		강일리버파크4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7길 19	
		강일리버파크5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7길 20	
		강일리버파크6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4길	
		강일리버파크7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8길 25	
		강일리버파크8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4길 72	
		강일리버파크9단지	강동구 고덕로97길 29	
		강일리버파크10단지	강동구 고덕로97길 20	
	강일2지구	고덕리엔파크1단지	강동구 상일로 152	지역난방
		고덕리엔파크2단지	강동구 고덕로 427	
		고덕리엔파크3단지	강동구 상일로 74	
	고덕강일지구	고덕강일2BL 국민임대주택	강동구 강일동 599-10	지열난방
	고덕강일2지구	강동리버스트4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3가길 110	지역난방
		강동리버스트6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3가길 77	
		강동리버스트7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3가길 70	
		강동리버스트8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3나길 88	
	고덕강일3지구	강동리엔파크9단지	강동구 고덕로98길 29	지역난방
		강동리엔파크14단지	강동구 고덕로98길 160	
	강서구	마곡지구	마곡엠밸리1단지	강서구 마곡서1로 131
마곡엠밸리2단지			강서구 마곡서1로 146	
마곡엠밸리3단지			강서구 마곡서1로 132	
마곡엠밸리4단지			강서구 마곡서로 175	
마곡엠밸리5단지			강서구 마곡서1로 111-11	
마곡엠밸리6단지			강서구 마곡서1로 100	
마곡엠밸리7단지			강서구 마곡서로 133	
마곡엠밸리8단지			강서구 마곡서1로 81	

자치구	지구명	단지명	소재지 주소(서울특별시)	난방방식
강서구	마곡지구	마곡엠밸리10단지	강서구 마곡중앙로 72	지역난방
		마곡엠밸리11단지	강서구 공향대로 124	
		마곡엠밸리12단지	강서구 공향대로 140	
		마곡엠밸리14단지	강서구 마곡중앙로 33	
		마곡엠밸리15단지	강서구 마곡중앙로 36	
	마곡지구 9단지	마곡지구 9단지	강서구 공향대로 103	지역난방
	발산지구	마곡수명산파크1단지	강서구 강서로47길 108	지역난방
		마곡수명산파크2단지	강서구 강서로47길 158	
		마곡수명산파크3단지	강서구 수명로1길 110	
		마곡수명산파크4단지	강서구 수명로1길 16	
마곡수명산파크5단지		강서구 수명로2길 105		
마곡수명산파크6단지		강서구 수명로2길 63		
마곡수명산파크7단지	강서구 수명로2가길 22			
구로구	천왕지구	천왕이펜하우스1단지	구로구 천왕로 91	개별난방
		천왕이펜하우스2단지	구로구 천왕로 92	
		천왕이펜하우스3단지	구로구 천왕로 56	
		천왕이펜하우스4단지	구로구 천왕로 29	
		천왕이펜하우스5단지	구로구 천왕로 10	
	천왕이펜하우스6단지	구로구 천왕로 9		
	천왕2지구	천왕연지타운1단지	구로구 오류로 30	개별난방
		천왕연지타운2단지	구로구 오리로 1102-10	
	항동지구	항동하버라인2단지	구로구 연동로 234	개별난방
		항동하버라인3단지	구로구 항동로 43	
항동하버라인4단지		구로구 항동로 72		
항동하버라인8단지		구로구 서해안로 2036		
노원구	상계보금자리지구	중계센트럴파크	노원구 덕릉로70가길 21	지역난방
	상계장암지구 (3,4단지)	수락리버시티3단지	노원구 누원로 28	지역난방
		수락리버시티4단지	노원구 누원로 18	
마포구	상암2지구	상암월드컵파크 9단지	마포구 월드컵북로 501	지역난방
		상암월드컵파크 10단지	마포구 월드컵북로 502-36	
		상암월드컵파크 11단지	마포구 월드컵북로 502-37	
		상암월드컵파크 12단지	마포구 월드컵북로 502-7	
	상암3-8단지	상암3-8단지	마포구 월드컵로42길 12	지역난방
서초구	내곡지구	서초포레스타2단지	서초구 현릉로8길 45	개별난방
		서초포레스타6단지	서초구 청계산로9길 1-12	
	우면2지구	서초네이처힐2단지	서초구 형촌길 15	개별난방
		서초네이처힐3단지	서초구 태봉로2길 60	
		서초네이처힐4단지	서초구 태봉로2길 65	
		서초네이처힐5단지	서초구 태봉로2길 5	
		서초네이처힐6단지	서초구 태봉로2길 30	
서초네이처힐7단지	서초구 태봉로2길 10			
성동구	마장동 임대아파트	마장동 에스에이치빌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15가길 23	개별난방
성북구	장월1	장월에스에이치빌1단지	성북구 한천로101길 54	개별난방
송파구	마천지구	송파파크데일1단지	송파구 성내천로37길 37	개별난방
		송파파크데일2단지	송파구 성내천로47길 38	
	오금지구	송파레미니스1단지	송파구 성내천로 6	개별난방
		송파레미니스2단지	송파구 동남로 341	
위례포레샤인 13단지	위례포레샤인13단지	송파구 위례서이로 25	지역난방	

자치구	지구명	단지명	소재지 주소(서울특별시)	난방방식
송파구	장지지구	위례포레샤인23단지	송파구 위례순환로 477	지역난방
		송파파인타운2단지	송파구 충민로 151	개별난방
		송파파인타운4단지	송파구 새말로12길 16	
		송파파인타운5단지	송파구 충민로4길 5	
		송파파인타운6단지	송파구 충민로6길 14	
		송파파인타운7단지	송파구 충민로4길 19	
		송파파인타운8단지	송파구 충민로4길 6	
		송파파인타운9단지	송파구 송파대로8길 17	
		송파파인타운10단지	송파구 송파대로8길 20	
		송파파인타운11단지	송파구 송파대로8길 58	
양천구	신정3지구	신정이펜하우스1단지	양천구 신정이펜1로 99	지역난방
		신정이펜하우스2단지	양천구 신정이펜2로 55	
		신정이펜하우스3단지	양천구 신정이펜1로 50	
		신정이펜하우스4단지	양천구 신정이펜1로 51	
		신정이펜하우스5단지	양천구 신정이펜1로 27	
신정4지구	신정숲속마을	양천구 신정로 110		
은평구	은평1지구	상림마을6-1	은평구 진관4로 78-7	지역난방
		상림마을6-2	은평구 진관4로 100	
		상림마을6-3	은평구 진관4로 107	
		상림마을6-4	은평구 진관4로 87	
		상림마을7-1	은평구 진관4로 78-8	
		상림마을7-2	은평구 진관4로 77	
		상림마을7-3	은평구 진관4로 47	
		상림마을7-4	은평구 진관4로 48-17	
		상림마을7-5	은평구 진관4로 48-8	
		상림마을8-1	은평구 진관4로 37	
		상림마을8-2	은평구 진관4로 17	
		상림마을8-3	은평구 진관3로 70	
		은평2지구	박석고개1-1	
	박석고개1-3		은평구 진관1로 21-10	
	마고정3-1		은평구 진관1로 55	
	마고정3-2		은평구 진관2로 90	
	마고정3-3		은평구 진관2로 60	
	우물골2-1		은평구 진관2로 67	
	은평3지구	우물골2-2	은평구 진관2로 77	지역난방
구파발9-1단지		은평구 진관3로 67		
구파발10-2단지		은평구 진관3로 15-35		
구파발10-3단지	은평구 북한산로 2			
중랑구	신내데시앙	신내데시앙	중랑구 용마산로 669	지역난방
	신내3지구	신내우디안1단지	중랑구 신내역로1길 85	개별난방
		신내데시앙포레	중랑구 신내역로 165	
의정부시	상계장암지구 (1,2단지)	수락리버시티1단지	의정부시 누원로 51	지역난방
		수락리버시티2단지	의정부시 누원로 52	



## 15. 단지별 유의사항

### - 단지별 유의 사항(공통) -

해당 공고문의 입주자 유의사항은 중요사항만을 요약하여 안내하였으니  
입주자께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여건 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 신규공급단지(고덕강일2BL 국민임대주택)는 **공고문 59쪽** 하단에 추가로 단지별 유의사항을 기재하였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자책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 제작된 것으로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지하철, 하천, 어린이공원, 도서관, 공공기관, 학교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공공시설의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전자책 상의 평면도와 달리 건축심의 및 인허가(사업승인) 과정에 따라 구조, 설비 및 발코니 위치, 모양, 면적 및 실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또는 전자책 등의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각종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등[단위세대 실내마감(세면기, 변기 위치, 창호 종류 및 위치, 등기구 종류, 벽체, 대피 공간 위치 등 포함), 외부색채계획, 단지주변 건물 및 도로, 조경시설물, 단지 진입로 등 포함]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 오기, 오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다양한 주거유형의 도입으로 단위세대 평형이 상하층 간에 다르게 설계된 경우도 발생하며, 동일 평형 중 발코니 면적 및 설치위치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설계, 동별 설계, 세대내부 설계, 외부 및 내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 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질,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기타 변동사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학급수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단지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로와 단지의 지표면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 별 아트월 및 가구, 도배, 타일, 위생도기와 마감재의 경우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별 동일 타입이라도 평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트월 벽면에 벽걸이TV 설치를 위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전기·통신용 매입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안내서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타입이라도 측벽에 위치한 세대는 벽체마감에 따라 실제면적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마감재(문선, 문틀, 아트월, 몰딩)등 시공 구간에 시공 특성상 타카핀이 불규칙 및 과다하게 사용되어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발코니, 화장실 단차는 세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설계 배치 상 기계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등 설치로 인해 인근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기 바랍니다.(지상 쓰레기보관소에 인접한 동은 냄새, 소음 및 미관저해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출입구에 설치된 주차관제설비 위치는 단지 여건상 경비실과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한 주출입구 차단기와 단지 내 보도는 점포 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아파트 입주자가 공동사용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유아용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저층세대 및 인접에 생활 소음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

- 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인접한 일부 동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 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별 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동의 저층부 등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 및 일조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피공간이나 실외기실 또는 이형평형으로 인한 상하층 간에 설치되는 우수, 우수배수 선홍통의 배수에 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시공된 우·배수 겸용관이 시공 상의 오차 및 건축구조에 따라 일부 위치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커뮤니티센터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 발코니 새시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외부 발코니 새시 설치로 발코니 창, 콘크리트 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에(외기 온도)차이로 인해 부득히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되도록 환기시설을 가동하여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 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관, 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입주 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평형별로 에어컨 배관이 다르게 설치되어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소음이 내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드레인(물 빠짐)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에어컨 형태에 따라 에어컨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된 경우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발코니 바닥과 실외기용 시스템 루버와 단차가 있어(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원활하게 환기시키기 위해) 실외기 하부에 높임 발판을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입주자가 관련법령의 절차에 따라 발코니를 개별적으로 확장할 경우 임의변경으로 인한 구조적문제, 결로, 누수, 환기장비 흡입구 막힘 등의 문제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전기 세대분전반 및 통신 세대통합단자함은 신발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비확장형)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45호]』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세대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은 화재 시 비상 대피공간이므로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대피공간은 건축법상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 및 시공되는 바, 단열재 미설치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 환기를 통하여 결로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 사용승인 후 입주민은 인테리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 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 시 책임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 주차장에서 물청소 및 세차 등을 할 경우 트랜치로 오염된 물이 흘러 시설물 및 차량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차장 내에서 물청소는 불가합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 출입문은 동별, 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 출입문 크기 및 구조가 다를 수 있으며 지하층 구조에 의한 동 출입구 형태가 동별로 상이하여 굴절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고저차 해소 및 녹지 공간 확보 등) 상황에 따라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어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부, 단지 출입구(차량, 보행로), 어린이 놀이터, 지하층 및 1층 공동현관 출입구 (옥상출입구 포함), 텃밭,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무인 택배함, 쓰레기수거장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감시 취약 지역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니다. 또한 공용부에 설치된 CCTV 설비는 야간에 설치 위치 환경에 따라 화질이 주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변압기, 스위치패드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외관 미관 저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가스배관이 불가피하게 복도 천장하부 및 창문하단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 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지붕 층에 설치되는 실외기로 인하여 주변 동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미관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발코니 미니태양광 설치로 인한 아파트 외관미관 저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 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게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외관, 단지명칭, 호수번호, 외부색채와 계획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협의에 따라 입주 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등) 및 수목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공청 및 위성안테나, 이동통신 중계용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시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지구(또는 단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의 전기, 급수, 급탕, 난방, 가스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입니다.
-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기 설치된 세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으며 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철거 시 철거비용이 발생합니다.

## [신규단지] 고덕강일2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유의사항

### [주변 여건]

- 단지 반경 1,000m 부근에 지하철 강일역, 상일동역이 있습니다.
- 단지 반경 500m 부근에 강일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 [단지 여건]

- 단지 내 설치된 지역편의시설은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이용가능한 시설입니다.
- 지역편의시설이 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5동과 206동 사이에 작은도서관이 위치하고 있고, 201동과 202동 사이에 경로당, 피트니스, 코인세탁소등이 위치하고 있고, 202동과 203동 사이에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2동 1층에 경비실과 관리사무소가, 사회적 기업 공간, 복합커뮤니티가 있습니다.
- 사회적 기업 공간은 지역 자치구와 협약을 통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3등급을 예비인증받은 공동주택으로, 202동과 203동 사이에 이를 홍보하기 위한 제로에너지 아파트 홍보관이 위치하고 있어, 관련 설명회 등이 개최될 수 있습니다.
- 202동과 203동 사이, 204동과 205동 사이, 205동과 206동 사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 인접한 세대는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2동 지하층에는 저수조,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5동 지하층에는 기계실, 냉각탑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부분 일부 녹지공간으로 이삿짐 차량은 비상차량 동선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냉난방은 지열을 이용한 중앙냉난방 방식으로 하절기에는 냉방, 동절기에는 난방만 공급이 가능하고 실내 온도조절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내 별도의 실외기실이 구획되지 않아 냉매를 이용한 냉방기(에어컨)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전실, 복도, 지하주차장의 소화배관은 동결·동파 방지를 위해 전기 열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동절기 동안 열선사용에 따른 전기료 및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각동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평상시에는 폐쇄되어 있으나 화재 시 개방됩니다.
- 각동 옥상 및 외벽에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배선을 위한 케이블덕트시설이 옥상바닥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의 경우 태양광발전설비의 반사광으로 일시적 눈부심 현상 및 인버터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창호 주변에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태양광 발전설비와 외벽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 창문 개폐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동 의 저층부 일부세대는 야간에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의 저층부 일부세대는 지표면 레벨차이로 인한 조경석 설치 등으로 인해 조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3등급 예비인증 받은 공동주택으로 목표에너지 자립율 달성과 관련 주민공동시설 옥상 등에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일부 세대의 경우 조망(눈부심 현상 포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는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능합니다.(사다리차 사용시 외단열재 파손우려)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바닥에 수직피난구가 설치되어 있는 세대는, 바닥타일면에 단차가 있습니다.
- 외기와 접하는 거실 및 발코니 PL창호는 3중유리 시스템창호로 설계되어 틸트앤턴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접하는 거실 및 발코니 PL창호 개폐방식은 안여닫이 방식입니다.
- PL창호는 블라인드 일체형 3중유리 시스템창호로 블라인드 보호유리-블라인드-3중유리 창호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블라인드 조작 등 창호 사용방법은 입주 시 제공되는 시설물 안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외 온도차이가 크면 결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합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근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아파트 일부세대는 수거함과 거리가 다소 멀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로의 진입로는 상위계획의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진입 차로 1개소, 진출 차로 2개소를 계획하여, 방문 차량으로 인해 진입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출입문은 동별·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 출입문 크기 및 구조가 다를 수 있으며, 지하층 구조에 의한 동출입구 통로 형태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204동의 경우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가 지하1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2층 주차장을 이용해야 할 경우 203동과 204동 사이에 계획된 별도 엘리베이터 및 보행경사로를 통해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입구의 층고로 인하여 대형 SUV차량, 차량 상부 부차물 설치차량, 화물차량, 생계형차량(탑차), 소형버스 등의 통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차량통로높이 B1F : 2.7m / B2F : 2.3m)
- 비상차량 출입 시 도로 협소에 따른 혼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640대(지하), 근린생활시설 2대(지상)로 총 642대이며, 주차구획은 일반형, 경형 주차구획[2~2.6m × 3.6~6m] 419대, 여성우선주차[2.5m × 5.0m] 142대, 장애인용 주차구획[3.3m × 5.0m] 21대, 전기차구획[2.3m × 5.0m] 26대, 저공해주차구획[2.6m × 5.2m] 33대입니다.
- 주차장 중 일부는 승용차 공동 이용(나눔카) 서비스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여 지하층 아파트 주동 출입구 근처에 장애인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지하1층)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26대(급속충전1대+완속4대+이동식 21대) 설치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타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에 따른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은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지열시스템)가 설치되어 냉난방 에너지로 이용되며, 지역난방으로 온수를 생산, 사용하게 되고 사용되는 지역난방 비용 등 유지관리를 위한 일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물청소 및 세차 등을 할 경우 시설물 및 주차된 차량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차장 내에서 물청소는 불가능합니다. (B1F 바닥방수 없음)
- 출입구에 설치된 주차관제설비 위치는 단지 여건상 경비실과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한 부출입구, 단지내 보도는 점포 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아파트 입주자가 공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는 흡출기가 설치되어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경비실은 단지 주출입구 옆에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내부시설(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지역편의시설 옥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가동 시 인접부 세대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최하층 승강기홀에는 결로 방지를 위한 제습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입주민은 제습기 사용에 따른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거실 벽면에 벽걸이TV 설치를 위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전기·통신용 매입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ALC벽 전용 규격제품사용)
- 정수기, 비데, 인덕션 등 일부 가전제품 사용 시 순간전압강하 현상에 의해 세대 내 전등에 깜빡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전제품 구입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주방에는 전기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스 쿡탑을 위한 별도 도시가스배관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49타입에는 다기능 생활정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에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BES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지상파 TV(FM)공청 안테나 및 위성안테나는 202동 옥상옥탑 지붕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 내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조명기구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세대의 전기, 급수, 급탕, 난방계량은 원격 검침 방식입니다.
- 세대내 방범용 동체감지기는 각동 1,2층 및 최상층에만 설치됩니다.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부, 단지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지하층 및 1층 주출입구, 옥상출입구 등에 설치되어있으며 감시 취약지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에 설치된 CCTV는 야간에 설치 위치 환경에 따라 화질이 주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 서비스용 중계기 시설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소관사항으로, 입주 시 설치되지 않을 수 있어 휴대전화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해당 시설물은 입주 후 입주자와 이동통신사간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여야 함)
- 이동통신 서비스용 중계기 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의대표(한국전파진흥협회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의 검토결과서에 따라 동 옥상에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물은 이동통신사에서 설치사항입니다.
- 일부 단위세대는 세탁기 설치를 위한 수전 등으로 인해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가 있으며, 평면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자 팸플릿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

공급단지	사업주체	시공업체	구조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난방방식
고덕강일 2BL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태영건설, 동부건설(주), 우미건설(주)	철근 콘크리트	-	(주)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 (주)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주)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지열시스템

**[ 단지별 세대 내 옵션 설치 여부 ]**

단지명	빌트인 가전 항목					비고
	팬코일유닛	냉장고	인덕션	세탁기		
고덕강일2BL	O	X	O	X	팬코일유닛:지열냉난방 시스템 열원 공급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현황 ]**

규모별	입주자 유형	세대수	동호수	편의시설	비고
29S형	주거약자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동</li> <li>■ 205동</li> <li>■ 206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손잡이</li> <li>- 욕실문 포켓도어</li> <li>- 화장실 비상버튼</li> </ul> </li> </ul>	
49S형	주거약자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4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손잡이</li> </ul> </li> <li>○ 거실/침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량감지기</li> </ul> </li> </ul>	

2024.09.26.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별표1〉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 등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 등
  - 분양권 등 신규 계약한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
  - 분양권 등 매수한 경우 :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잔금지급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
- ※ 준공 후 등기처리 된 경우는 주택으로 처리됨
4.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 소유 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S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멸실,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 회신 문서를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건물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내용은 무허가건물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소명인정 불가하며, 당시 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적법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었다면 소명이 불가)
-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 ⑩ 보유한 분양권 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 원(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별표2〉

## ■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 산재보험, 2) 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증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총자산	일반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li> <li>-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li> <li>-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 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li> <li>-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li> </ul>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소득, 자산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확인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 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향후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미제출시 자격결격으로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li> <li>•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li> <li>•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li> <li>•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li> </ul>
총자산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li> <li>•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li> </ul>
	<p>자동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li>•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li> </ul>
	<p>금융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조사일부터 과거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li> <li>•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조사일 기준의 계좌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조사일 기준의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li> <li>•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조사일 기준의 액면가액</li> <li>• 연금저축 : 조사일 기준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보험증권 : 조사일 기준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li>• 연금보험 : 조사일 기준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ul>

구분	산정방법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li> <li>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li> <li>「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 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li> <li>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li> </ul> </li> <li>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 까지 납부한 금액</li> </ul>
부채 (총자산 산정시 자산합계 금액에서 차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마이네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의 경우 부채인정불가)</li> <li>「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금</li> <li>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li> <li>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이 외 개인 간 사채 인정불가)</li> <li>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li> <li>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공공해자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li> </ul>

■ 소득 심사업무 처리 절차도



- ※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 소득의 일반적인 조사 및 소명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훈령 고시 또는 지침에 의함.
- ※ 주택, 소득, 총자산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직접 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 상시근로자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
  -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
  -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 ⑤ 국세청 자료 순으로 반영됨.

■ 소득 소명 반영 여부 주요 예시

소명사항	반영여부
동일사업장 2개 이상 소득 중복	1개 사업장으로 반영
소득자료가 현재 소득과 상이	소명기간 내 원천기관 자료 수정 및 확인서 제출시 반영

※ 소명관련 주요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소득 종류에 따라 소명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함.

2024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4.11.08.(금)  
16시 이후

최종 당첨자 발표

2025.03.28.(금)  
16시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www.i-sh.co.kr](http://www.i-sh.co.kr)

콜센터 1600 - 3456